

※접수번호			※관리번호	
-------	--	--	-------	--

2018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안)

과 제 명	국 문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영 문	2nd Year of Study in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연구책임자	소 속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성 명	강 소 영
연구진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보조원	계	
	5명	1명	6명	

상기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강 소 영 (인)

건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단 (직인)

통계청장 귀 하

제 출 문

통 계 청 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건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강소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공동연구원 장현석(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춘삼(분당경찰서)
김면기(경찰대학)
강성용(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보 조 원 홍명기(경기대학교 범죄학과)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관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ICCS 대분류 01에 대한 시산 및 분석	7
I. ICCS 대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항목의 시산 과정	7
1. 우리나라 대검찰청 죄명코드와 ICCS 시산을 위한 연계 과정	7
2. 대검찰청 죄명코드와 ICCS 대분류 01항목 시산을 위한 수정된 최종 연계표	9
II. ICCS 대분류 01 대한 시산결과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비교분석	32
1.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에 대한 시산결과	32
2.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ICCS 대분류 01의 비교 분석	36
제3장. ICCS 대분류 07, 08에 대한 연계 및 시산	39
I. ICCS 대분류 07, 08의 연계쟁점과 논의 과정	39
1. 한국 죄명코드의 과다 또는 과소포섭 문제로 인한 연계 쟁점	39
2. 기타 과다포섭에 따라 연계 불가한 한국 죄명코드에 대한 논의	42
3. 기타 연계상의 쟁점이 되는 법률	43
II. ICCS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 와 한국죄명코드의 연계	46
1. 사기(0701)	46
2. 위조 행위(0702)	56
3. 부패(0703)	75
4.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	86
5.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9)	90

Ⅲ. ICCS 08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와 한국죄명코드의 연계	93
1.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 (0801)	93
2.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0802)	95
3.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0803)	99
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0804)	101
5. 이민과 관련된 행위(0805)	105
6.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0806)	106
7. 민주적인 선거와 관련된 행위(0807)	109
8.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0808)	110
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0809)	111
Ⅳ. ICCS 대분류 07, 08에 대한 시산 결과	112

제4장. 결론 및 제언 116

I. ICCS 대분류 01의 분석결과와 제언	116
II. ICCS 대분류 07, 08의 연계결과와 제언	118

참고문헌 122

과제 요약

1. 과제명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2. 과제배경

-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15.3.)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3. 연구과제의 목적

-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ICCS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쟁점을 범죄유형(ICCS 대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분류체계를 구축
 -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4. 연구과제의 범위

-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1, 07, 08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 ICCS대분류 01, 사망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
 - ICCS대분류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 ICCS대분류 08, 공공질서, 권위, 국가 규범 위반 행위

제1장 연구의 개관

I. 연구의 배경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의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통계를 산출하여 국가 간의 범죄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UNODC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분류 체계이다.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범죄통계를 표준화 하고자 하는 시도는 1951년 UN 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나, 국가 간의 상이한 법률체계와 상이한 범죄 정의 등으로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다(UNODC, 2015). UN에서 범죄통계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9년 UNODC와 UNECE가 주도하여 범죄분류체계 개발을 전담할 TF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UN에서 여러 국가 간의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에 개최된 제46차 UN통계위원회는 표준화된 범죄 분류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ICCS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ICCS Ver.1.0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UN이 향후 1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2015년 8월에 공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데 있어 안전 영역의 측정 지표로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ICCS Ver.1.0이 공개 되고 난 후 국내에서는 2015년 통계청을 중심으로 범죄 유관 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부처 간 TF를 구성하고 ICCS이행을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통계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리고 치안정책연구소가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를 구성하여 ICCS Ver.1.0에 대한 번역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2017년에는 통계청에서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연구를 수행하여 ICCS의 분류체계를 현재 한국 형사사법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죄명코드와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 범죄통계는 죄명마다 부여된 코드를 각 범죄사건 또는 피의자에게 부여하고 추후 코드를 집계하여 범죄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ICCS코드와 한국 죄명코드가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형사법 전공자와 범죄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학이론과 범죄학 이론들을 고려하여 연계 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UNODC의 ICCS 이행 추진 과정

UNODC에서 ICCS 버전 1.0을 공표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은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강소영 외, 2017)’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Bisogno, Dawson-Faber, & Jandle (2015)의 연구에서도 ICCS 도입의 배경, 목적, 도입 과정 상의 어려움, ICCS 범죄분류의 구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ICCS 공표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도입이 진행되었는지 웹사이트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ICCS-TAG(Technical Advisory Group) 전문가 그룹 미팅을 개최하여 개별 국가에서 ICCS를 적용할 때 참고할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였다¹⁾. 또한 대륙별 국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6년 멕시코에서 제3회 ‘거버넌스, 범죄 그리고 사법통계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제2회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룩셈부르크에서 ‘범죄와 형사사법에 관한 유로스텟 통계 실무자 그룹’회의가 있었고, 2017년에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ICCS 이행을 위한 지역별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대전 통계청에서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UNODC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케냐,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우간다, 아르헨티나에서 개별 국가를 위한 워크숍과 훈련을 진행하였다.

UNODC는 2018년 5월에 ICCS 이행 매뉴얼(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mplementation Manual)을 출판하였다. ICCS 버전 1.0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이행 매뉴얼로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이행 매뉴얼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UNODC, 2018: 2).

1. ICCS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을 정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 자국 범죄통계분류표와 ICCS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조표와 연계표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 개별화 변수(Disaggregating variables)들의 적용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4. 구체적인 죄수의 산정 규칙과 ICCS의 범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5. 구체적인 범죄 분류에 의문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Activities/Session_2_ICCS_-_Global_Update_and_Implementation_Manual.pdf

이와 더불어 UNODC 공식 웹사이트에는 ICCS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참여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할 단계를 설정해 놓았다²⁾. 이행 로드맵이 제시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제도적 틀의 정립 - 이행을 위하여 국가별로 실무자 그룹을 형성하고 ICCS 이행을 추진할 국가의 중심부서(National Focal Point)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2. 인식 제고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사용자들에게 ICCS 도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홍보한다. 또한, ICCS 버전 1.0을 관련자들에게 제공한다.
3. 국제협력과 지원 - 국가 차원의 ICCS실무자 그룹이 형성되면 UNODC에 알려서 이행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다.
4. 기술적 준비 작업 - ICCS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ICCS의 내용을 분석하여 ICCS에서 범죄로 분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각 나라의 법규정과 차이가 나는지 검토한다.
5. 현재 범죄 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 - 현재 생산되고 있는 범죄 통계의 타당도, 신뢰도와 여타 통계 품질에 대하여 평가한다.
6. 국가 차원의 이행계획 수립 - 현행 범죄통계 생산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무자 그룹이 ICCS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7. 이행계획의 단계적 추진 - 점진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ICCS 이행을 실행한다.
8. ICCS 이행이 완료된 범죄통계의 산출 - ICCS 각 대분류 영역별로 범죄통계를 시산해본다.
9. ICCS가 적용된 국가 통계의 출판
10. ICCS 이행 결과를 UNODC에 보고

UNODC는 ICCS 이행 매뉴얼과 이행 로드맵을 통하여 참여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ICCS를 도입하여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

2. 외국에서의 ICCS 이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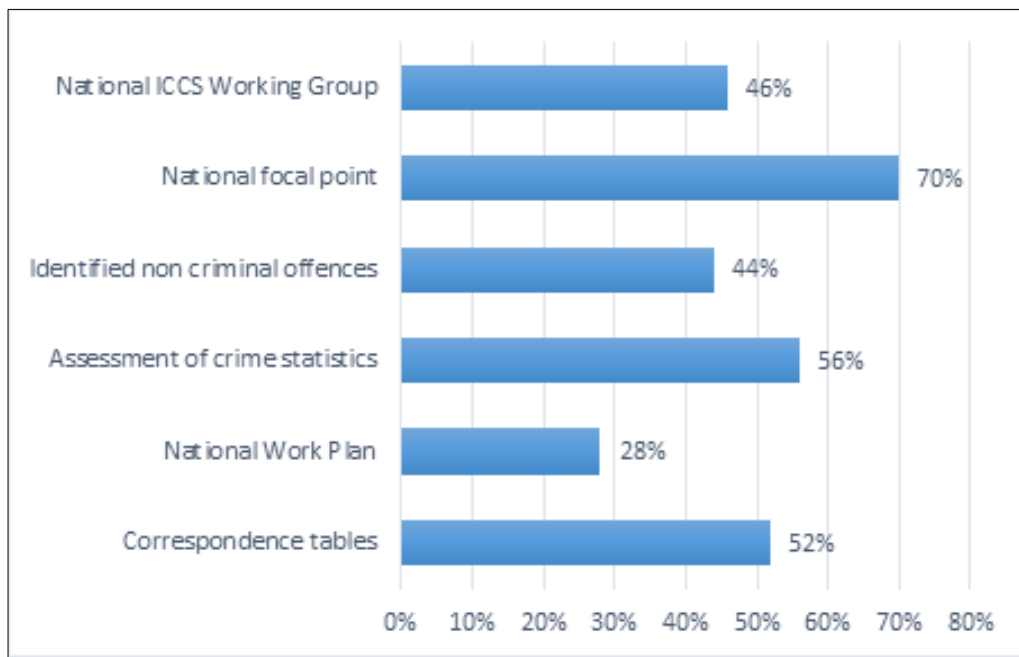
UNODC는 개별 국가에서 ICCS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CCS-TAG Virtual Platform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설하였다³⁾. 이 플랫폼을 통하여 참여 국가들은 ICCS 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행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27개 참여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ICCS 이행이 진척되었는지 조사를 하였

2)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Crime-statistics/ICCS_Implementation_National_Roadmap.pdf

3) <https://connections.unite.un.org/communities/login>

다(그림 1 참조). 27개국 46%의 국가들은 ICCS 이행을 위한 실무자 그룹이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70%의 참여국들이 ICCS 이행을 위한 국가 중심부서(National Focal Point)가 선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UNODC 이행 로드맵 상에서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참여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국가에서 실무자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여 아직 많은 나라들의 이행 단계가 빠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높은 단계인 국가 수준의 이행계획을 수립한 나라는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8년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21개국이 추가 되어 ICCS-TAG Virtual Platform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4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UN-CTS와 ICCS-TAG 담당자 회의에서 현재 까지 각국에서의 ICCS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⁴⁾. 2018년 현재 독일은 ICCS 대분류 01 -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연계작업을 마쳤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ICCS를 적용하여 미국 범죄통계를 개정하기 위한 기본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림 1> Survey on State of ICCS Implementation (N=27)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ICCS 이행 진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연구를 통하여 ICCS 버전 1.0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쳤고(장다혜 외, 2016; 최대현 외, 2016), 2017년에는 번역된 ICCS를 각 대분류 별로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와 연계하는 연구를 이미 수행하였다(강소영 외, 2017). 이는 이행 로드맵의 4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을

4)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Activities/Session_2_ICCS_-_Global_Update_and_Implementation_Manual.pdf

이미 마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를 통하여 5단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범죄 통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단계의 경우 통계청을 중심으로 ICCS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본 연구는 ICCS 대분류 01 -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분에 대한 시산을 하는 단계로서 이행 로드맵의 7단계와 8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나머지 ICCS 대분류 항목들에 대한 시산이 완료 되면 전체 ICCS 범죄 항목에 대한 시산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ICCS 대분류 01, 07, 08에 대한 연계표의 검토와 시산이다. 우선, ICCS 대분류 01에 대한 시산을 통해 2017년 과제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범죄분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영역과 연계된 한국의 죄명코드를 바탕으로 실제로 각 ICCS 01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세분류에 몇 건의 범죄가 실제로 집계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산(試算)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집계된 지난 3년 동안(2014-2016)의 범죄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찰이 해마다 발표하는 ‘「범죄분석」’의 살인 영역 자료와 ICCS체계를 따른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어 시산된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가 연도별로 각 하위 항목별로 변화 패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ICCS 연계 상 이슈들에 대하여 검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실무자들이 우리나라 범죄통계를 ICCS 분류체계로 시산할 때 해설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산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ICCS 07과 08에 대해서는 1) 번역과정상 용어의 적정성 검토 2) 각 죄명코드에 대한 연계와 쟁점 논의 3) 범죄통계 시산 4) 연계쟁점 해결을 통한 연계표 보완 및 해설표 작성 등이 연구의 범위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ICCS 07의 사기, 기망, 부패 등의 행위로 연계할 수 있는 우리형법상 대표적인 죄명인 “사기”는 현행범죄분류체계에서 재산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성격 즉, 행위기준 자체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또한, ICCS 07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수많은 특별법들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지, 혹은 세분화하여 일부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용어의 적정성 검토는 행위기준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학문적 정의뿐 아니라 실무상 해석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자(검찰, 경찰) 및 학계전문가(법학자, 범죄학자) 등의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CCS 07의 사기, 기망, 부패 그리고 ICCS 08의 공공질서, 권위, 국가 규범 위반 행위들은 현행 한국범죄분류체계의 특성상 형법상 행위기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특별법에 해당되는 관련 행위들에 대한 연계가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연계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실무자 및 자문위원과 연구의 이해도가 높은 기존집필진을 검토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보고회 또는 연구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논의과정 및 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한다.

제2장 ICCS 대분류 01에 대한 시산 및 분석

I. ICCS 대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항목의 시산 과정

1. 우리나라 대검찰청 죄명코드와 ICCS 시산을 위한 연계 과정

이 연구는 ICCS 대분류 01 항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죄명분류코드를 각각 ICCS 01의 하위 분류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별로 할당하였다. 이렇게 할당된 죄명분류코드를 대검찰청에 보내어 시산 과정을 거쳤다. 시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된 범죄정보를 이용하여 ICCS 각 분류 항목별로 몇 건의 범죄 발생 건수가 도출 되는지 실제 추출해 보는 작업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소속 범죄통계 주무관이 실제 시산에 참여하여 시산 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진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가능하면 정확한 시산을 하기 위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아래에는 시산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시산과 2017년 한국범죄분류 타당성 연구(강소영 외, 2017)에서 작성한 연계표 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 ① 기존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사용해 오다가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되어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동안 관련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다(나영민, 2012). 범죄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접수하면 범죄발생원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KICS에는 범죄의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가 각각 작성이 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 통계산출의 단위가 “사건” 이기 때문에 발생원표를 기준으로 죄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A는 살인을 교사하고 피의자B는 살인을 실행하여 기수에 이르렀을 때, 이 경우 살인 발생 건수는 1로 기록된다. 우리나라 죄명코드와 연계할 때는 이 사건의 경우 ICCS ‘0101 - 고의에 의한 살인’에 죄명코드 ‘살인-0121010100’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동일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A에 대한 죄명코드 ‘살인교사-0124010101’는 같은 사건이므로 죄수로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살인사건에 정범에 종속하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있을 경우 정범에 의하여 죄수가 산입된다. ICCS 0101은 살인의 기수만 산입되도록 정의되어 있어서 시산할 때 오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살인의 교사와 방조를 제외하고 시산하였다. 중분류 「0104-자살 방조 또는 교사」의 경우 자살 방조와 자살 교사 자체가 정범으로서 구성요

건을 갖추므로 각각 죄로 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히 방조와 교사를 별도의 정범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하여 시산 하였다. 중분류 「0109-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또한 교사와 방조를 포함한 상태에서 시산하였다.

② 2017년 연구에서 ICCS와 죄명분류코드를 연계할 때,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도 모두 포함하였으나, 검찰청에서 매년 「범죄분석」을 발간할 때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검찰의 「범죄분석」 통계는 우리 사회일반에서 발생하는 범죄만 포함하고 군대 범죄는 제외한 범죄통계였다.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는 군 검찰과 법원이 자체 관리하고 우리나라 사회일반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군대 범죄를 국가의 범죄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FBI는 전국의 경찰서에서만 범죄통계를 취합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⁵⁾. 따라서 이번 시산에서 군 형법위반과 관련된 죄명분류코드⁶⁾는 시산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③ 우리나라 죄명코드는 현실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한 코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강간치사미수-0132050110의 경우 ‘치사’ 라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는데, ‘미수’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이 밖에도 ‘치사미수’로 끝나는 죄명코드가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KICS 입력 시에도 입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시산에도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발생 불가능한 코드는 최대한 연계표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2017년 연계에서 “강간살인미수-0132050210”가 죄명코드에 포함되어 있어 ICCS 중분류 ‘0102-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분류 되었으나, 형법상 강간살인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⁷⁾. 따라서 시산할 때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첫째, ①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와 방조의 경우 정범이 있을 경우 죄수 산입에서 정범에 종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죄수로 산입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있었으나 정범이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범은 죄가 되지 않으나 교사자는 처벌하므로(형법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 별도의 죄수로 산입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시산에서 이러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연계표를 작성할 때 ICCS 각 항목의 정의에 따라 교사와 방조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5) <https://ucr.fbi.gov/nibrs/summary-reporting-system-srs-user-manual>

6) 죄명코드 중에서 04로 시작하는 코드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죄명코드인데, 본 연구에서 모두 제외 되었다.

7) 강소영 외, (2017)연구 35페이지 쟁점 3에 대한 문제 해결로 볼 수 있다.

중분류 0109의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0101 - 0107의 각 범주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 해석상 교사와 방조 행위가 별도의 죄수로 산정될 수도 있다. 중분류 0109의 죄명코드에서 교사와 방조를 제외하고 시산한 것과 교사와 방조를 그대로 두고 시산한 것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검찰청에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시산표를 제공하여 각각 시산한 것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교사와 방조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분류 0109와 같이 항목의 정의에서 교사와 방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포함하고 시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산 단계에서 제외하고 시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시산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CCS 대분류 01의 각 하위분류 항목의 정의에서 교사와 방조가 제외 되어야 하는 경우는 교사와 방조를 시산할 때 제외하였다. 이후 다른 대분류의 경우에도 교사와 방조의 경우 각 항목을 연계할 때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와 방조도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이 하는 것이 해석상 옳을 경우 이를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하고 연계표를 작성하여 시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시산을 할 때, SPSS로 시산을 해보고 또한 엑셀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KICS 시스템에서 ICCS 각 항목에 연계된 죄명코드들을 추출하여 통계산출을 할 때 SPSS 패키지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별로 몇 건의 사건들이 취합이 되는지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ICCS 분류항목 별로 시산을 해서 SPSS 산출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검증하였다.

2. 대검찰청 죄명코드와 ICCS 대분류 01항목 시산을 위한 수정된 최종 연계표 (Correspondence Tables)

아래 <표 1>은 ICCS 대분류 01의 하위항목들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시산을 하기 위하여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항목에 대하여 우리나라 죄명코드와 연계를 실시하였다. <표 1>에서 가로줄이 표시된 항목들은 ICCS 항목과 연계가 불가능하여 시산에서 제외하였다. 「0105-안락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살인이나 촉탁·승낙살인죄 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므로 시산하지 않았다. 또한 「0107-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우리나라 죄명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시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강소영 외, 2017, p. 48).

<표 1> ICCS 대분류 01의 하위분류 항목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0102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상해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0104	자살 방조 또는 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0105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1) ICCS 중분류 「0101-고의에 의한 살인」 과 죄명코드 연계

<표 2>는 ICCS 중분류 「0101 - 고의에 의한 살인」 항목 시산에 포함된 죄명코드를 정리한 것이다. 죄명이 같으나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10자리 죄명코드 중에서 끝 네 자리가 0000으로 끝나는 코드는 해당 죄명의 대표 코드이다 (xxxxxx0000). 예를 들어 살인은 0124010000과 0124010100 두 가지가 있는데, 0124010000은 살인에 대한 대표 코드이고 0124010100은 살인기수를 의미한다. 실제 시산에서는 살인기수에 해당하는 0124010100 죄명코드가 시산이 된다.

우리나라 「범죄분석」의 살인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해치사와 존속상해치사가 고의에 의한 살인에 포함된 것이 「0101-고의에 의한 살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고의에 의한 살인(0101)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0101020000	내란목적살인
	0101020100	내란목적살인
	0124010000	살인
	0124010100	살인
	0124020000	존속살인
	0124020100	존속살해
	0124030000	영아살해
	0124030100	영아살해
	0124040000	동의살인
	0124040100	촉탁살인
	0124040200	승낙살인
	0124060000	위계동의살인
	0124060100	위계촉탁살인
	0124060200	위력촉탁살인
	0124060300	위계승낙살인
	0124060400	위력승낙살인
	0125050000	상해치사
	0125050100	상해치사
	0125060000	존속상해치사
	0125060100	존속상해치사
	0131111100	피약취자살해
	0131111200	피유인자살해
	0131111300	피매매자살해
	0131111400	피국의이송자살해
	0132050200	강간살인
	0132050300	유사강간살인
	0132050500	준유사강간살인
	0132070200	강제추행살인
	0132090200	준강간살인
	0132110200	준강제추행살인
	0132170800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01321710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01321816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01321820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0137010600	인질살해
	0138130000	강도살인
	0138130100	강도살인
	0138190000	해상강도살인
	0138190100	해상강도살인
	020603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0206032500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살인)
	0206044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
	0206044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촉탁살인)
	0206044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승낙살인)
	0206045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
	0206045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
	0206045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
	0206045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
	0206057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0209010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0209919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살인)	
0209919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사강간살인)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02099199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강제추행살인)
	02099202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간살인)
	02099204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유사강간살인)
	02099206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제추행살인)
	02099222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간살인)
	02099226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살인)
	02160707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0206033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0132070300	강간미수살인
	0132070500	유사강간미수살인

2) ICCS 중분류 「0102-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죄명코드 연계

ICCS 중분류 0102는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집계하는데, 2017년 연구에서 ICCS 버전 1.0의 분석에 따르면 살인의 예비와 음모는 중분류 0102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⁸⁾. 따라서 <표 3-1>은 예비와 음모를 제외한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죄명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는 살인의 미수·예비·음모가 같은 항목으로 묶여서 보고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ICCS 「0102-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범죄분석」의 ‘살인 미수·예비·음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별도로 살인의 예비와 음모를 시산해 보았다 <표3-2>. 시산에 대한 결과는 <표 10> 하단의 참고에 표시해 두었다.

<표 3-1>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010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0101020110	내란목적살인미수
	0124010110	살인미수
	0124020110	존속살해미수
	0124030110	영아살해미수
	0124040110	촉탁살인미수
	0124040210	승낙살인미수
	0124060110	위계촉탁살인미수
	0124060210	위력촉탁살인미수
	0124060310	위계승낙살인미수
	0124060410	위력승낙살인미수
	0131111110	피약취자살해미수

8) 강소영 외. (2017) 35페이지 쟁점 1: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에 살인의 예비·음모도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Attempted”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비나 음모의 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형법은 살인과 같은 중요범죄의 경우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별하여 예비·음모의 경우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를 뽑을 때도 살인의 예비·음모를 미수에 포함하여 시산하고 있다(경찰청 ‘범죄통계’). 영미의 경우 미수범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먼저 우리의 ‘실행미수’에 해당되는 “complete-but-imperfect attempt”로 실행하자고 계획한 행위 모두를 실행했지만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로 우리의 ‘착수미수’에 해당되는 “incomplete attempt”로 행위자가 범죄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중지하거나 방해된 경우이다. 미수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즉 ‘실행미수’이든 ‘착수미수’이든 ‘Attempt’는 실행착수 이후의 미수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살인예비·음모에 관한 범죄는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로는 분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0131111210	피유인자살해미수
0131111310	피매매자살해미수
0131111410	피국외이송자살해미수
0137010610	인질살해미수
0138130110	강도살인미수
0138190110	해상강도살인미수

<표 3-2> 고의에 의한 살인의 예비·음모

한국죄명코드		
고의에 의한 살인 예비·음모	0124020120	존속살해예비
	0124020130	존속살해음모
	0131111120	피약취자살해예비
	0131111130	피약취자살해음모
	0131111220	피유인자살해예비
	0131111230	피유인자살해음모
	0131111320	피매매자살해예비
	0131111330	피매매자살해음모
	0131111420	피국외이송자살해예비
	0131111430	피국외이송자살해음모
	0124010120	살인예비
	0124010130	살인음모
	0124060120	위계촉탁살인예비
	0124060130	위계촉탁살인음모
	0124060220	위력촉탁살인예비
	0124060230	위력촉탁살인음모
	0124060320	위계승낙살인예비
	0124060330	위계승낙살인음모
	0124060420	위력승낙살인예비
	0124060430	위력승낙살인음모
	02060456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예비)
	02060457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예비)
	02060458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예비)
	02060459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예비)
	0206046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예비)
	02060463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음모)
	02060464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촉탁살인음모)
	02060465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음모)
	02060466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촉탁살인음모)
	02060467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음모)

3) ICCS 소분류 「01031-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과
죄명코드 연계

「01031-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은 우리나라 「범죄분석」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 사건들이 포함된다. <표 4>에 시산할 때 포함된 죄명코드들을 열거하였다.

<표 4>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01031)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31 살인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0125110000	폭행치사
	0125110100	폭행치사
	0125130000	존속폭행치사
	0125130100	존속폭행치사
	0125150000	특수폭행치사
	0125150100	특수폭행치사
	0125250100	특수존속폭행치사
	0127040000	동의낙태치사
	0127040100	촉탁낙태치사
	0127040200	승낙낙태치사
	0127080000	업무상낙태치사
	0127080100	업무상낙태치사
	0127100000	부동의낙태치사
	0127100100	부동의낙태치사
	0127120000	업무상촉탁낙태치사
	0127120100	업무상촉탁낙태치사
	0127140000	업무상승낙낙태치사
	0127140100	업무상승낙낙태치사
	0128100000	유기치사
	0128100100	유기치사
	0128120000	존속유기치사
	0128120100	존속유기치사
	0128140100	중유기치사
	0128160100	중존속유기치사
	0128180100	영아유기치사
	0128200100	학대치사
	0128220100	존속학대치사
	0129150000	체포치사
	0129150100	체포치사
	0129170000	감금치사
	0129170100	감금치사
	0129190100	존속체포치사
	0129210100	존속감금치사
	0129230100	중체포치사
	0129250100	중감금치사
	0129270100	중존속체포치사
	0129290100	중존속감금치사
	0129310100	특수체포치사
	0129330100	특수감금치사
	0129350100	특수존속체포치사
	0129370100	특수존속감금치사
	0129390100	특수중체포치사
	0129410100	특수중감금치사
	0129430100	특수중존속체포치사
	0129450100	특수중존속감금치사
	0129470100	상습체포치사
	0129490100	상습감금치사
	0129510100	상습존속체포치사
0129530100	상습존속감금치사	
0129550100	상습중체포치사	
0129570100	상습중감금치사	
0129590100	상습중존속체포치사	
0129610100	상습중존속감금치사	
0131111500	피약취자치사	
0131111600	피유인자치사	

01031 살인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0131111700	피매매차치사
	0131111800	피국외이송차치사
	0132050000	강간치사
	0132050100	강간치사
	0132050400	유사강간치사
	0132050600	준유사강간치사
	0132070000	강제추행치사
	0132070100	강제추행치사
	0132070400	강간미수치사
	0132090000	준강간치사
	0132090100	준강간치사
	0132110000	준강제추행치사
	0132110100	준강제추행치사
	01321704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01321706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01321817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01321821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0137010700	인질치사
	0138140000	강도치사
	0138140100	강도치사
	0138200000	해상강도치사
	0138200100	해상강도치사
	0206028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치사)
	020604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치사)
	0206057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
	02099102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02099196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치사)
	0209919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사강간치사)
	0209920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제추행치사)
	0209920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준강간치사)
	0209920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준유사강간치사)
	0209922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0209922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02160708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사)
	0132070400	강간미수치사
	0132070600	유사강간미수치사

4) ICCS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과 죄명코드 연계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항목에 연계된 죄명코드들은 아래 <표 5-1>에 나열하였다. 장소영 외(2017)의 연구에는 20개의 죄명코드가 연계되었으나, 이중 18개의 코드가 과실합선복물치사 등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를 위한 죄명코드들이어서 앞서 언급했듯이 군대 범죄를 시산에서 제외하여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연구 당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체에 하나의 죄명코드가 부여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연계하지 않았으나(장다혜 외, 2016, p.39), 대검찰청에서 새롭게 개정된 범죄코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명코드가 세분화 되어 본 연구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0209015000’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020901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0209014400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0209014600 또한 운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에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표 5-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010321)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20901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0209014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0209014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0209015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사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치사의 경우 모두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다. 이와는 달리 아래 <표 5-2>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들처럼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하거나,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그리고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경우에는 ICCS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으로 연계하는 것보다 「0109-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와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은 가해자가 운송수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강소영 외, 2017; 장다혜 외, 2016).

<표 5-2> 운송수단 교통방해, 전복, 매몰, 추락, 파괴의 죄들

01150800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0801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100000	기차등교통방해치사
0115100100	기차교통방해치사
0115100200	전차교통방해치사
0115100300	자동차교통방해치사
0115100400	선박교통방해치사
0115100500	항공기교통방해치사
0115120000	기차등전복치사
0115120100	기차전복치사
0115120200	전차전복치사
0115120300	자동차전복치사
0115120400	선박전복치사
0115120500	항공기전복치사
0115140000	기차등매몰치사
0115140100	기차매몰치사
0115140200	전차매몰치사
0115140300	자동차매몰치사
0115140400	선박매몰치사
0115140500	항공기매몰치사
0115160000	기차등추락치사
0115160100	기차추락치사
0115160200	전차추락치사

0115160300	자동차추락치사
0115160400	선박추락치사
0115160500	항공기추락치사
0115180000	기차등과괴치사
0115180100	기차과괴치사
0115180200	전차과괴치사
0115180300	자동차과괴치사
0115180400	선박과괴치사
0115180500	항공기과괴치사

5) ICCS 세분류 「010322-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과 죄명코드 연계

「010322-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은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중과실치사 세 가지 죄명코드가 시산을 위해 포함되었다<표 6>.

<표 6>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010321)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0126020000	과실치사
	0126020100	과실치사
	0126040000	업무상과실치사
	0126040100	업무상과실치사
	0126040200	중과실치사

6) ICCS 소분류 「01041-자살방조」와 죄명코드 연계

「01041-자살 방조」와 연계된 죄명코드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자살 방조(01041)와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41 자살 방조	0124050200	자살방조
	0124050202	자살방조방조
	0124050210	자살방조미수

7) ICCS 소분류 「01042-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와 죄명코드 연계

「01042-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와 연계된 죄명코드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01042)와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0124050100	자살교사
	0124050101	자살교사교사
	0124050102	자살교사방조
	0124050110	자살교사미수
	0124050201	자살방조교사
	0124060500	위계자살결의
	0124060501	위계자살결의교사
	0124060502	위계자살결의방조
	0124060510	위계자살결의미수
	0124060600	위력자살결의
	0124060601	위력자살결의교사
	0124060602	위력자살결의방조
	0124060610	위력자살결의미수
	0206045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
	0206045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교사
	0206045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자살결의)방조
	0206045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
	0206045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교사
	0206045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자살결의)방조

8) ICCS 중분류 「0106-불법 낙태」와 죄명코드 연계

「0106-불법 낙태」와 연계된 죄명코드들이 아래 <표 8>에 열거되었다.

<표 8> 불법 낙태(0106)와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0106 불법 낙태	0127020000	동의낙태
	0127020200	승낙낙태
	0127020201	승낙낙태교사
	0127020202	승낙낙태방조
	0127050200	업무상승낙낙태
	0127050201	업무상승낙낙태교사
	0127050202	업무상승낙낙태방조
	0127060000	부동의낙태
	0127060100	부동의낙태
	0127060101	부동의낙태교사
	0127060102	부동의낙태방조
	0127010000	낙태
	0127010100	낙태
	0127020100	축탁낙태
	0127050000	업무상낙태
	0127050100	업무상축탁낙태

9) ICCS 중분류 「0109-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와 죄명코드 연계

시산을 위해 「0109-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와 연계된 죄명코드는 아래 <표 9>에 정리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 교사와 방조를 포함한 연계표를 이용하여 시산하였다.

<표 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0109)와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죄명코드	
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08180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01081801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0108180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교사
	01081801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방조
	0108200000	특수법정,국회의장모욕치사
	0108200100	특수법정모욕치사
	0108200101	특수법정모욕치사교사
	0108200102	특수법정모욕치사방조
	0108200200	특수법정소동치사
	0108200201	특수법정소동치사교사
	0108200202	특수법정소동치사방조
	0108200300	특수국회의장모욕치사
	0108200301	특수국회의장모욕치사교사
	0108200302	특수국회의장모욕치사방조
	0108200400	특수국회의장소동치사
	0108200401	특수국회의장소동치사교사
	0108200402	특수국회의장소동치사방조
	0108220000	특수공무상표시등무효치사
	0108220100	특수공무상봉인손상치사
	0108220101	특수공무상봉인손상치사교사
	0108220102	특수공무상봉인손상치사방조
	0108220200	특수공무상표시손상치사
	0108220201	특수공무상표시손상치사교사
	0108220202	특수공무상표시손상치사방조
	0108220300	특수공무상공인은닉치사
	0108220301	특수공무상공인은닉치사교사
	0108220302	특수공무상공인은닉치사방조
	0108220400	특수공무상표시은닉치사
	0108220401	특수공무상표시은닉치사교사
	0108220402	특수공무상표시은닉치사방조
	0108220500	특수공무상봉인무효치사
	0108220501	특수공무상봉인무효치사교사
	0108220502	특수공무상봉인무효치사방조
	0108220600	특수공무상표시무효치사
	0108220601	특수공무상표시무효치사교사
	0108220602	특수공무상표시무효치사방조
	01082400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등개피치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08240100	특수공무상비밀봉합개피치사
0108240101	특수공무상비밀봉합개피치사교사
0108240102	특수공무상비밀봉합개피치사방조
0108240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치사
0108240201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치사교사
0108240202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치사방조
0108240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치사
0108240301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치사교사
0108240302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치사방조
0108241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치사
0108241201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치사교사
0108241202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치사방조
01082414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치사
0108241401	특수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치사교사
0108241402	특수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치사방조
0108241600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치사
0108241601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치사교사
0108241602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치사방조
01082418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치사
0108241801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치사교사
0108241802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치사방조
01082420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치사
0108242001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치사교사
0108242002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치사방조
01082422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치사
0108242201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치사교사
0108242202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치사방조
0108260000	특수공용서류등무효치사
0108260100	특수공용서류손상치사
0108260101	특수공용서류손상치사교사
0108260102	특수공용서류손상치사방조
0108260200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
0108260201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교사
0108260202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방조
0108260300	특수공용서류은닉치사
0108260301	특수공용서류은닉치사교사
0108260302	특수공용서류은닉치사방조
0108260400	특수공용물건은닉치사
0108260401	특수공용물건은닉치사교사
0108260402	특수공용물건은닉치사방조
0108260500	특수공용서류무효치사
0108260501	특수공용서류무효치사교사
0108260502	특수공용서류무효치사방조
0108260600	특수공용물건무효치사
0108260601	특수공용물건무효치사교사
0108260602	특수공용물건무효치사방조
0108280000	특수공용건조물등파괴치사
0108280100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사
0108280101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사교사
0108280102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사방조
0108280200	특수공용선박파괴치사
0108280201	특수공용선박파괴치사교사
0108280202	특수공용선박파괴치사방조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08280300	특수공용기차과괴치사
0108280301	특수공용기차과괴치사교사
0108280302	특수공용기차과괴치사방조
0108280400	특수공용항공기과괴치사
0108280401	특수공용항공기과괴치사교사
0108280402	특수공용항공기과괴치사방조
0108300000	특수공무상보관물등무효치사
01083001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사
0108300101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사교사
0108300102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사방조
01083002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사
0108300201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사교사
0108300202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사방조
01083003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사
0108300301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사교사
0108300302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사방조
01083004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사
0108300401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사교사
0108300402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사방조
0108300500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치사
0108300501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치사교사
0108300502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치사방조
0108300600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치사
0108300601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치사교사
0108300602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치사방조
0113040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011304010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0113040101	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
0113040102	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조
0113040200	현주기차방화치사
0113040201	현주기차방화치사교사
0113040202	현주기차방화치사방조
0113040300	현주전차방화치사
0113040301	현주전차방화치사교사
0113040302	현주전차방화치사방조
0113040400	현주자동차방화치사
0113040401	현주자동차방화치사교사
0113040402	현주자동차방화치사방조
0113040500	현주선박방화치사
0113040501	현주선박방화치사교사
0113040502	현주선박방화치사방조
0113040600	현주항공기방화치사
0113040601	현주항공기방화치사교사
0113040602	현주항공기방화치사방조
0113040700	현주광갱방화치사
0113040701	현주광갱방화치사교사
0113040702	현주광갱방화치사방조
0113060000	현존건조물등방화치사
0113060100	현존건조물방화치사
0113060101	현존건조물방화치사교사
0113060102	현존건조물방화치사방조
0113060200	현존기차방화치사
0113060201	현존기차방화치사교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3060202	현존기차방화치사방조
0113060300	현존전차방화치사
0113060301	현존전차방화치사교사
0113060302	현존전차방화치사방조
0113060400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113060401	현존자동차방화치사교사
0113060402	현존자동차방화치사방조
0113060500	현존선박방화치사
0113060501	현존선박방화치사교사
0113060502	현존선박방화치사방조
0113060600	현존항공기방화치사
0113060601	현존항공기방화치사교사
0113060602	현존항공기방화치사방조
0113060700	현존광갱방화치사
0113060701	현존광갱방화치사교사
0113060702	현존광갱방화치사방조
0113170300	폭발성물건파열치사
0113170301	폭발성물건파열치사교사
0113170302	폭발성물건파열치사방조
0113173400	가스방출치사
0113173401	가스방출치사교사
0113173402	가스방출치사방조
0113173500	전기방출치사
0113173501	전기방출치사교사
0113173502	전기방출치사방조
0113173600	증기방출치사
0113173601	증기방출치사교사
0113173602	증기방출치사방조
0113173700	방사선방출치사
0113173701	방사선방출치사교사
0113173702	방사선방출치사방조
0113173800	방사성물질방출치사
0113173801	방사성물질방출치사교사
0113173802	방사성물질방출치사방조
0113173900	가스유출치사
0113173901	가스유출치사교사
0113173902	가스유출치사방조
0113174000	전기유출치사
0113174001	전기유출치사교사
0113174002	전기유출치사방조
0113174100	증기유출치사
0113174101	증기유출치사교사
0113174102	증기유출치사방조
0113174200	방사선유출치사
0113174201	방사선유출치사교사
0113174202	방사선유출치사방조
0113174300	방사성물질유출치사
0113174301	방사성물질유출치사교사
0113174302	방사성물질유출치사방조
0113174400	가스살포치사
0113174401	가스살포치사교사
0113174402	가스살포치사방조
0113174500	전기살포치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3174501	전기살포치사교사
0113174502	전기살포치사방조
0113174600	증기살포치사
0113174601	증기살포치사교사
0113174602	증기살포치사방조
0113174700	방사선살포치사
0113174701	방사선살포치사교사
0113174702	방사선살포치사방조
0113174800	방사성물질살포치사
0113174801	방사성물질살포치사교사
0113174802	방사성물질살포치사방조
0113250000	가스등공급방해치사
0113250100	가스공급방해치사
0113250101	가스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50102	가스공급방해치사방조
0113250200	전기공급방해치사
0113250201	전기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50202	전기공급방해치사방조
0113250300	증기공급방해치사
0113250301	증기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50302	증기공급방해치사방조
0113260000	가스등사용방해치사
0113260100	가스사용방해치사
0113260101	가스사용방해치사교사
0113260102	가스사용방해치사방조
0113260200	전기사용방해치사
0113260201	전기사용방해치사교사
0113260202	전기사용방해치사방조
0113260300	증기사용방해치사
0113260301	증기사용방해치사교사
0113260302	증기사용방해치사방조
0113290000	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치사
0113290100	공공용가스공급방해치사
0113290101	공공용가스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90102	공공용가스공급방해치사방조
0113290200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
0113290201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90202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사방조
0113290300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사
0113290301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사교사
0113290302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사방조
0113300000	공공용가스등사용방해치사
0113300100	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사
0113300101	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사교사
0113300102	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사방조
0113300200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
0113300201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교사
0113300202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사방조
0113300300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0113300301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교사
0113300302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방조
0114010000	일수치사상
0114010100	일수치사상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4010101	일수치사상교사
0114010102	일수치사상방조
0114010110	일수치사상미수
0114011600	현주건조물일수치사
0114011601	현주건조물일수치사교사
0114011602	현주건조물일수치사방조
0114011800	현존건조물일수치사
0114011801	현존건조물일수치사교사
0114011802	현존건조물일수치사방조
0114012000	현주기차일수치사
0114012001	현주기차일수치사교사
0114012002	현주기차일수치사방조
0114012200	현존기차일수치사
0114012201	현존기차일수치사교사
0114012202	현존기차일수치사방조
0114012400	현주전차일수치사
0114012401	현주전차일수치사교사
0114012402	현주전차일수치사방조
0114012600	현존전차일수치사
0114012601	현존전차일수치사교사
0114012602	현존전차일수치사방조
0114012800	현주자동차일수치사
0114012801	현주자동차일수치사교사
0114012802	현주자동차일수치사방조
0114013000	현존자동차일수치사
0114013001	현존자동차일수치사교사
0114013002	현존자동차일수치사방조
0114013200	현주선박일수치사
0114013201	현주선박일수치사교사
0114013202	현주선박일수치사방조
0114013400	현존선박일수치사
0114013401	현존선박일수치사교사
0114013402	현존선박일수치사방조
0114013600	현주항공기일수치사
0114013601	현주항공기일수치사교사
0114013602	현주항공기일수치사방조
0114013800	현존항공기일수치사
0114013801	현존항공기일수치사교사
0114013802	현존항공기일수치사방조
0114014000	현주광경일수치사
0114014001	현주광경일수치사교사
0114014002	현주광경일수치사방조
0114014200	현존광경일수치사
0114014201	현존광경일수치사교사
0114014202	현존광경일수치사방조
01150800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0801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080101	일반교통방해치사교사
0115080102	일반교통방해치사방조
0115100000	기차등교통방해치사
0115100100	기차교통방해치사
0115100101	기차교통방해치사교사
0115100102	기차교통방해치사방조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5100200	전차교통방해치사
0115100201	전차교통방해치사교사
0115100202	전차교통방해치사방조
0115100300	자동차교통방해치사
0115100301	자동차교통방해치사교사
0115100302	자동차교통방해치사방조
0115100400	선박교통방해치사
0115100401	선박교통방해치사교사
0115100402	선박교통방해치사방조
0115100500	항공기교통방해치사
0115100501	항공기교통방해치사교사
0115100502	항공기교통방해치사방조
0115120000	기차등 전복치사
0115120100	기차전복치사
0115120101	기차전복치사교사
0115120102	기차전복치사방조
0115120200	전차전복치사
0115120201	전차전복치사교사
0115120202	전차전복치사방조
0115120300	자동차전복치사
0115120301	자동차전복치사교사
0115120302	자동차전복치사방조
0115120400	선박전복치사
0115120401	선박전복치사교사
0115120402	선박전복치사방조
0115120500	항공기전복치사
0115120501	항공기전복치사교사
0115120502	항공기전복치사방조
0115140000	기차등매몰치사
0115140100	기차매몰치사
0115140101	기차매몰치사교사
0115140102	기차매몰치사방조
0115140200	전차매몰치사
0115140201	전차매몰치사교사
0115140202	전차매몰치사방조
0115140300	자동차매몰치사
0115140301	자동차매몰치사교사
0115140302	자동차매몰치사방조
0115140400	선박매몰치사
0115140401	선박매몰치사교사
0115140402	선박매몰치사방조
0115140500	항공기매몰치사
0115140501	항공기매몰치사교사
0115140502	항공기매몰치사방조
0115160000	기차등추락치사
0115160100	기차추락치사
0115160101	기차추락치사교사
0115160102	기차추락치사방조
0115160200	전차추락치사
0115160201	전차추락치사교사
0115160202	전차추락치사방조
0115160300	자동차추락치사
0115160301	자동차추락치사교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5160302	자동차추락치사방조
0115160400	선박추락치사
0115160401	선박추락치사교사
0115160402	선박추락치사방조
0115160500	항공기추락치사
0115160501	항공기추락치사교사
0115160502	항공기추락치사방조
0115180000	기차등과괴치사
0115180100	기차과괴치사
0115180101	기차과괴치사교사
0115180102	기차과괴치사방조
0115180200	전차과괴치사
0115180201	전차과괴치사교사
0115180202	전차과괴치사방조
0115180300	자동차과괴치사
0115180301	자동차과괴치사교사
0115180302	자동차과괴치사방조
0115180400	선박과괴치사
0115180401	선박과괴치사교사
0115180402	선박과괴치사방조
0115180500	항공기과괴치사
0115180501	항공기과괴치사교사
0115180502	항공기과괴치사방조
0116060000	음용수혼독치사
0116060100	음용수독물혼입치사
0116060101	음용수독물혼입치사교사
0116060102	음용수독물혼입치사방조
0116060200	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
0116060201	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교사
0116060202	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방조
01160603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0116060301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교사
0116060302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방조
01160604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
0116060401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교사
011606040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방조
0124010101	살인교사
0124010102	살인방조
0124010710	살인교사미수
0124020101	존속살해교사
0124020102	존속살해방조
0124030101	영아살해교사
0124030102	영아살해방조
0124040101	촉탁살인교사
0124040102	촉탁살인방조
0124040201	승낙살인교사
0124040202	승낙살인방조
0124060101	위계촉탁살인교사
0124060102	위계촉탁살인방조
0124060201	위력촉탁살인교사
0124060202	위력촉탁살인방조
0124060301	위계승낙살인교사
0124060302	위계승낙살인방조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24060401	위력승낙살인교사
0124060402	위력승낙살인방조
0125050101	상해치사교사
0125050102	상해치사방조
0125060101	존속상해치사교사
0125060102	존속상해치사방조
0125110101	폭행치사교사
0125110102	폭행치사방조
0125130101	존속폭행치사교사
0125130102	존속폭행치사방조
0125150101	특수폭행치사교사
0125150102	특수폭행치사방조
0125250101	특수존속폭행치사교사
0125250102	특수존속폭행치사방조
0126020101	과실치사교사
0126020102	과실치사방조
0126040101	업무상과실치사교사
0126040102	업무상과실치사방조
0126040201	중과실치사교사
0126040202	중과실치사방조
0127040101	축타낙태치사교사
0127040102	축타낙태치사방조
0127040201	승낙낙태치사교사
0127040202	승낙낙태치사방조
0127080101	업무상낙태치사교사
0127080102	업무상낙태치사방조
0127100101	부동의낙태치사교사
0127100102	부동의낙태치사방조
0127120101	업무상축타낙태치사교사
0127120102	업무상축타낙태치사방조
0127140101	업무상승낙낙태치사교사
0127140102	업무상승낙낙태치사방조
0128100101	유기치사교사
0128100102	유기치사방조
0128120101	존속유기치사교사
0128120102	존속유기치사방조
0128140101	중유기치사교사
0128140102	중유기치사방조
0128160101	중존속유기치사교사
0128160102	중존속유기치사방조
0128180101	영아유기치사교사
0128180102	영아유기치사방조
0128200101	학대치사교사
0128200102	학대치사방조
0128220101	존속학대치사교사
0128220102	존속학대치사방조
0129150101	체포치사교사
0129150102	체포치사방조
0129170101	감금치사교사
0129170102	감금치사방조
0129190101	존속체포치사교사
0129190102	존속체포치사방조
0129210101	존속감금치사교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29210102	존속감금치사방조
0129230101	중체포치사교사
0129230102	중체포치사방조
0129250101	중감금치사교사
0129250102	중감금치사방조
0129270101	중존속체포치사교사
0129270102	중존속체포치사방조
0129290101	중존속감금치사교사
0129290102	중존속감금치사방조
0129310101	특수체포치사교사
0129310102	특수체포치사방조
0129330101	특수감금치사교사
0129330102	특수감금치사방조
0129350101	특수존속체포치사교사
0129350102	특수존속체포치사방조
0129370101	특수존속감금치사교사
0129370102	특수존속감금치사방조
0129390101	특수중체포치사교사
0129390102	특수중체포치사방조
0129410101	특수중감금치사교사
0129410102	특수중감금치사방조
0129430101	특수중존속체포치사교사
0129430102	특수중존속체포치사방조
0129450101	특수중존속감금치사교사
0129450102	특수중존속감금치사방조
0129470101	상습체포치사교사
0129470102	상습체포치사방조
0129490101	상습감금치사교사
0129490102	상습감금치사방조
0129510101	상습존속체포치사교사
0129510102	상습존속체포치사방조
0129530101	상습존속감금치사교사
0129530102	상습존속감금치사방조
0129550101	상습중체포치사교사
0129550102	상습중체포치사방조
0129570101	상습중감금치사교사
0129570102	상습중감금치사방조
0129590101	상습중존속체포치사교사
0129590102	상습중존속체포치사방조
0129610101	상습중존속감금치사교사
0129610102	상습중존속감금치사방조
0131111101	피약취자살해교사
0131111102	피약취자살해방조
0131111201	피유인자살해교사
0131111202	피유인자살해방조
0131111301	피매매자살해교사
0131111302	피매매자살해방조
0131111401	피국외이송자살해교사
0131111402	피국외이송자살해방조
0131111501	피약취자치사교사
0131111502	피약취자치사방조
0131111601	피유인자치사교사
0131111602	피유인자치사방조

<p>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p>	0131111701	피매매자치사교사
	0131111702	피매매자치사방조
	0131111801	피국외이송자치사교사
	0131111802	피국외이송자치사방조
	0132050101	강간치사교사
	0132050102	강간치사방조
	0132050201	강간살인교사
	0132050202	강간살인방조
	0132050301	유사강간살인교사
	0132050302	유사강간살인방조
	0132050401	유사강간치사교사
	0132050402	유사강간치사방조
	0132050501	준유사강간살인교사
	0132050502	준유사강간살인방조
	0132050601	준유사강간치사교사
	0132050602	준유사강간치사방조
	0132070101	강제추행치사교사
	0132070102	강제추행치사방조
	0132070201	강제추행살인교사
	0132070202	강제추행살인방조
	0132090101	준강간치사교사
	0132090102	준강간치사방조
	0132090201	준강간살인교사
	0132090202	준강간살인방조
	0132110101	준강제추행치사교사
	0132110102	준강제추행치사방조
	0132110201	준강제추행살인교사
	0132110202	준강제추행살인방조
	013217040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교사
	013217040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방조
	013217060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교사
	013217060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방조
	0132170801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교사
	0132170802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방조
	013217100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교사
	013217100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방조
	0132181601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교사
	0132181602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방조
	0132181701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교사
	0132181702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방조
	0132182001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교사
	0132182002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방조
	0132182101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교사
	0132182102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방조
	0137010601	인질살해교사
	0137010602	인질살해방조
	0137010701	인질치사교사
0137010702	인질치사방조	
0138130101	강도살인교사	
0138130102	강도살인방조	
0138140101	강도치사교사	
0138140102	강도치사방조	
0138190101	해상강도살인교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38190102	해상강도살인방조
0138200101	해상강도치사교사
0138200102	해상강도치사방조
0142050000	손괴치사
0142050100	재물손괴치사
0142050101	재물손괴치사교사
0142050102	재물손괴치사방조
0142050200	재물은닉치사
0142050201	재물은닉치사교사
0142050202	재물은닉치사방조
0142050300	문서손괴치사
0142050301	문서손괴치사교사
0142050302	문서손괴치사방조
0142050400	문서은닉치사
0142050401	문서은닉치사교사
0142050402	문서은닉치사방조
0142050500	공익건조물파괴치사
0142050501	공익건조물파괴치사교사
0142050502	공익건조물파괴치사방조
0142050600	전자기록등손괴치사
0142050601	전자기록등손괴치사교사
0142050602	전자기록등손괴치사방조
0142050700	전자기록등은닉치사
0142050701	전자기록등은닉치사교사
0142050702	전자기록등은닉치사방조
0206044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교사
0206044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방조
0206044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축타살인)교사
0206044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축타살인)방조
0206044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승낙살인)교사
0206044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승낙살인)방조
0206045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축타살인)교사
0206045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축타살인)방조
0206045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교사
0206045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계승낙살인)방조
0206045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축타살인)교사
0206045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축타살인)방조
0206045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교사
0206045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위력승낙살인)방조
0206057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교사
0206057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방조
0206057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교사
0206057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방조
0209010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교사
0209010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방조
02099102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교사
02099102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
02099195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살인)교사
02099195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살인)방조
02099196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치사)교사
02099196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치사)방조
02099197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사강간살인)교사
02099197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사강간살인)방조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2099198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유사강간치사)교사
02099198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유사강간치사)방조
02099199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강제추행살인)교사
02099199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강제추행살인)방조
02099201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강제추행치사)교사
02099201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강제추행치사)방조
02099202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간살인)교사
0209920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간살인)방조
02099203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간치사)교사
02099203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간치사)방조
020992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유사강간살인)교사
02099204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유사강간살인)방조
02099205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유사강간치사)교사
02099205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유사강간치사)방조
02099206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제추행살인)교사
02099206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준강제추행살인)방조
02099222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간살인)교사
0209922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간살인)방조
02099223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간치사)교사
02099223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간치사)방조
02099226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살인)교사
02099226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살인)방조
0209922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치사)교사
02099227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치사)방조
020992560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수행등방해치사)
02099256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수행등방해치사)교사
01150800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080100	일반교통방해치사
0115100000	기차등교통방해치사
0115100100	기차교통방해치사
0115100200	전차교통방해치사
0115100300	자동차교통방해치사
0115100400	선박교통방해치사
0115100500	항공기교통방해치사
0115120000	기차등전복치사
0115120100	기차전복치사
0115120200	전차전복치사
0115120300	자동차전복치사
0115120400	선박전복치사
0115120500	항공기전복치사
0115140000	기차등매몰치사
0115140100	기차매몰치사
0115140200	전차매몰치사

0109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0115140300	자동차매몰치사
	0115140400	선박매몰치사
	0115140500	항공기매몰치사
	0115160000	기차등추락치사
	0115160100	기차추락치사
	0115160200	전차추락치사
	0115160300	자동차추락치사
	0115160400	선박추락치사
	0115160500	항공기추락치사
	0115180000	기차등과괴치사
	0115180100	기차과괴치사
	0115180200	전차과괴치사
	0115180300	자동차과괴치사
	0115180400	선박과괴치사
	0115180500	항공기과괴치사

II. ICCS 대분류 01 대한 시산결과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비교분석

1.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에 대한 시산결과

ICCS 대분류 01의 각 하위분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연계한 것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를 시산해 보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분류 「0105-안락사」와 중분류 「0107-무력분쟁관련 불법 살해」는 우리나라에 처벌 법규가 없어서 시산에서 제외하였다(<표 1> 참조).

아래 <표 10>은 ICCS 대분류 01에 대한 시산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영역 시산결과(2014-2016)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2014	2015	2016	3년* 평균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450	451	433	445
0102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505	537	508	517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대한 상해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			115	95	84	98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	0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1,209	1,198	1,235	1,214
0104	자살 방조 또는 교사	01041	자살 방조			17	24	41	27
		01042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2	3	1	2
0106	불법 낙태					31	38	36	35
0109	기타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25	24	22	24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총계:						2,354	2,370	2,958	2,560

참고: 살인의 예비·음모: 2014년-52건; 2015년-42건; 2016년-55건

* 소수점 이하 생략

먼저 중분류 「0101-고의에 의한 살인」은 2014년 450건, 2015년 451건, 2016년 433건으로 시산 되었다. 3년 치의 고의에 의한 살인은 2016년에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445건을 중심으로 크게 편차를 보이지 않으면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분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는 3년 평균 517건을 보였으며, 2015년은 537건으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는 살인미수와 함께 살인의 예비, 음모 그리고 방조도 같은 항목에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강소영 외 (2017, p. 35)의 연구에서 ICCS에서는 우리나라 형법규정상 살인의 예비와 음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시산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방조의 경우에도 정범에 의하여 죄수가 산입되므로 제외하였다(강소영 외, 2017, p. 20). ICCS와 비교 목적으로 <표 10> 아래 참고에 3년 동안 발생한 살인의 예비·음모를 표시하였다. 살인의 예비와 음모는 3년 동안 평균 50건씩 발생하였고, 연도별로 큰 변동은 없었다. 살인의 예비와 음모를 제외한 ICCS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평균치인 517건의 약 9.6%에 해당하는 50건 정도가 작게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분류 「01031-살인고의 및 중한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은 3년 평균은 98건 이었고, 2014년 115건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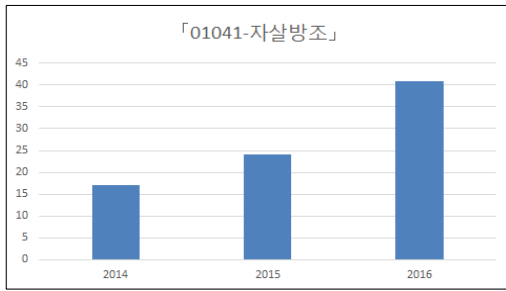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은 2014년과 2015년에는 집계되지 않다가 2016년도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대검찰청에서 2016년도에 죄명코드 분류 작업을 하면서 이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체에 하나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던 것을 코드 세분화 작업을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에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어 시산에 잡힌 것이다. 상당수의 특별법들의 경우 여전히 특별법 전체에 하나의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가 다른 대분류 영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법에 대한 코드세분화 여부에 따라서 범죄발생 통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시산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보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부여된 단일 코드를 세분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분류 「010322-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은 3년 평균 1,214건의 발생건수를 보였다. 3년 동안 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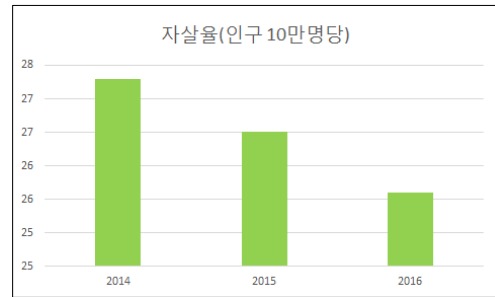
2016년 기준 한 해동안 발생한 「0101-고의에 의한 살인」과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은 하위분류로 소분류 「01031-살인고의 및 중한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을 합산한 결과 2016년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의 발생건수는 1,917건 이었다. 이것은 2016년 발생한 「0101-고의에 의한 살인」 433건보다 약 4.43배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소분류 「01041-자살방조」는 2014년 17건에서 2015년 24건, 그리고 2016년에는 41건으로 발생건수가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ICCS에서 자살방조를 별도의 항목으로 취합함에 따라 언론이나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살방조의 규모가 어떻고 또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면서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6명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하지만,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나라 자살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⁹⁾(<그림 3 참조>). 자살방조범의 증가는 자살을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 정책뿐만 아니라 자살을 방조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도 강화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9) e-나라지표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그림 2> 「01041-자살방조」



<그림 3> 우리나라 자살율

소분류 「01042-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는 소분류 「01041-자살방조」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자살교사, 설득 등을 통한 자살 등이 그 예가 된다. 3년 동안 발생한 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3건, 그리고 2016년 1건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 「0104-자살 방조 또는 교사」는 소분류 01041과 소분류 01042를 합산한 것이다. 이들의 합산한 통계치는 2014년 19건, 2015년 27건, 2016년 42건이었고, 3년 평균은 29건이었다.

중분류 「0106-불법 낙태」는 사람이 고의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촉탁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4년 31건, 2015년 38건, 그리고 2016년 36건으로 시산되었고, 이들의 3년 평균은 35건이었다.

중분류 「0109-기타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중분류 0101 - 0107의 각 범주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이 항목에는 우리 형법상 사망을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의 기본범죄가 사망한 피해자를 행위객체로 하지 않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들이 모두 포함된다. (강소영 외, 2017).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25건, 2015년 24건, 그리고 2016년 22건이 기록되었고, 3년의 평균은 24건이었다.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로 집계되는 발생건수는 <표 10>에 포함된 각 하위분류들의 총합이다. 대분류 01의 발생건수는 2014년 2,354건, 2015년 2,370건, 그리고 2016년 2,958건으로 집계 되었다. 2016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이 2016년부터 시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이 포함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통계이므로 2016년 발생건수인 2,958건이 ICCS 대분류 01의 시산결과로 볼 수 있다. 즉, ICCS 분류 기준으로 통계를 시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한 해에 약 3,000건 정도의 사건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2.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ICCS 대분류 01의 비교 분석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범죄 통계를 작성해서 보여준다. 「범죄분석」에 보고된 범죄 발생통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나누어진다.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분석」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ICCS와 「범죄분석」의 비교를 위해 「범죄분석」에서 보고하는 범죄들 중에서 ICCS 대분류 01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해서 비교하도록 한다. 아래 <표 11>은 「범죄분석」에 보고된 항목 중에서 ICCS 「0101-고의에 의한 살인」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영역과 ICCS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살인과 관련된 「범죄분석」의 통계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범죄분석」의 대분류 형법범죄에 속하고, 중분류로서 강력범죄(흉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분류로서 살인이 있고, 세분류로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 건수를 알고 싶을 때는 살인(기수) 통계를 이용한다.

<표 11> 「범죄분석」 과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간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014	2015	2016	3년* 평균	
「범죄분석」 형법범죄	강력범죄 (흉악)	살인	살인(기수)	366	359	344	356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572	599	604	592	
			살인의 소계	938	958	948	948	
	강력범죄 (폭력)	상해	강도	강도살인	30	29	21	27
			성폭력	강간등살인	7	5	6	6
			상해치사	65	73	69	69	
ICCS 01**	0101-고의에 의한 살인			450	451	433	445	
	010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505	537	508	517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1,324	1,293	1,917	1,511	
	0104-자살 방조 또는 교사			19	27	42	29	
	0106-불법 낙태			31	38	36	35	
	0109-기타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			25	24	22	24	
	ICCS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총계:			2,354	2,370	2,958	2,560	

* 소수점 이하 생략; ** ICCS는 중분류 값만 제시함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56건 정도 발생한다. 이는 ICCS 「0101-고의에 의한 살인」의 분류에 따른 통계의 3년 치 평균인 445건보다 89건이 적은 수치이다. 즉, 「범죄분석」상의 고의 살인이 ICCS상의 고의 살인보다 약 20% 정도 낮은 수치로 보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ICCS 「0101-고의에 의한 살인」에는 ‘상해치사’, ‘강간살인’, 그리고 ‘강도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했다. 한편 「범죄분석」은 <표 11>과 같이 강도살인, 강간등살인, 그리고 상해치사를 별도의 중분류와 세분류로 보고하고 있다. 「범죄분석」의 살인(기수), 강도살인, 강간등살인, 그리고 상해치사를 합산하면 2014년 468건, 2015년 466건, 2016년 440건이 된다. 이러한 수치는 ICCS 「0101-고의에 의한 살인」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범죄분석」에서 강도살인, 강간등살인, 그리고 상해치사는 예비, 음모, 방조 등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서 ICCS보다 약간 많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 보면 「범죄분석」에서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3년 평균 592건으로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CCS는 중분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는 3년 평균 517건을 보였다. 이는 「범죄분석」보다 평균 75건이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분석」의 경우 살인미수와 함께 살인의 예비, 음모 그리고 방조도 같은 항목에 보고되고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범죄분석」의 살인(기수)와 ICCS의 「0101-고의에 의한 살인」영역을 비교해 보면, ICCS 형태의 통계보고가 「범죄분석」보다 20% 정도 높게 보고가 되고, 살인 미수의 경우 예비, 음모, 방조가 제외된 ICCS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가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범죄통계에서 살인 영역을 확인할 때 표에서 제시한 값을 그 나라의 전체 살인발생 정도로 인식한다. 아래 <그림 4>는 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살인 통계를 보여준다. 살인 항목에는 ‘살인 기수’와 별도의 항목으로 ‘살인의 미수, 예비, 음모, 방조’를 제시 주고 두 항목을 합산한 소계를 제시한다. 2016년에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여 있다. ICCS를 기준으로 시산한 통계가 출판된다면 사람들이 대분류 01이 살인과 관련된 통계 이므로 우리나라 살인 발생 건수를 확인할 때, 대분류 01의 총계를 살펴볼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범죄분석」의 살인 소계는 948건 이었고, ICCS 대분류 01의 총계는 2,958건 이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ICCS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가 「범죄분석」의 살인(기수)보다 3.12배 높은 것이 된다.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총괄 1-1-1-A)

단위 : 건(발생·검거원표), 명(피의자원표)

2016년			발생		검거		검거인원			범인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소계	남	여		미상			
총계			2,008,290	3,884.8	1,691,370	84.2	2,020,196	1,621,184	368,645	30,367	22,246			
현	범	형	1,005,689	1,945.4	789,278	78.5	1,007,048	805,210	185,844	15,994	1,455			
		법	573,445	1,109.3	389,937	68.0	429,896	333,597	90,853	5,446	1,030			
		재	산	범	계	203,573	393.8	119,010	58.5	107,308	82,288	24,543	477	11
					절도	195,693	378.5	112,366	57.4	103,499	78,680	24,349	470	11
					불법채권채입	522	1.0	423	81.0	674	644	27	3	-
					사절도	7,358	14.2	6,221	84.5	3,135	2,964	167	4	-
					장물	2,086	4.0	2,117	101.5	3,815	3,259	542	14	1
					계	250,600	484.8	203,236	81.1	236,001	181,007	51,405	3,589	815
					사기	242,530	469.1	199,194	82.1	231,266	177,546	50,197	3,523	809
					컴퓨터등사용사기	5,072	9.8	2,396	47.2	2,838	2,125	670	43	3
					부당이익득	52	0.1	44	84.6	66	50	14	2	-
					편의시설부정이용	227	0.4	156	68.7	203	156	46	1	3
		잔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2,687	5.2	1,416	52.7	1,584	1,095	469	2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32	0.1	30	93.8	44	35	9	-	-			
		횡령	52,069	100.7	27,923	53.6	37,984	29,417	7,883	684	107			
		죄	배	임	계	5,757	11.1	5,025	87.3	9,391	7,396	1,591	404	71
					배임	4,933	9.5	4,259	86.3	7,974	6,083	1,507	384	65
					배임수중재	602	1.2	562	93.4	1,004	929	60	15	3
		손	괴	손	계	222	0.4	204	91.9	413	384	24	5	3
					손괴	59,360	114.8	32,626	55.0	35,397	30,230	4,889	278	25
손괴치상사	59,358				114.8	32,623	55.0	35,394	30,229	4,887	278	25		
살	인	살	계	2	0.0	3	150.0	3	1	2	-	-		
			살인	-	-	-	-	-	-	-	-	-		
			살인(미수·예비·음모·방조)	-	-	-	-	-	-	-	-	-		
계			32,963	63.8	31,668	96.1	33,529	32,188	1,156	185	5			
범	인	살	계	948	1.8	936	98.7	1,043	866	146	31	3		
			살인(기수)	344	0.7	333	96.8	372	278	73	21	3		
			살인(미수·예비·음모·방조)	604	1.2	603	99.8	671	588	73	10	-		

<그림 4> 검찰청 「범죄분석」 살인통계

결론적으로 ICCS 기준으로 새롭게 분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ICCS가 우리나라 「범죄분석」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3장 ICCS 대분류 07, 08에 대한 연계 및 시산

I. ICCS 대분류 07, 08의 연계쟁점과 논의 과정¹⁰⁾

1. 한국 죄명코드의 과다 또는 과소포섭 문제로 인한 연계 쟁점

2017년 연구에 이어 한국 죄명코드의 과다포섭 또는 과소포섭으로 인해 ICCS와 연계를 할 수 없는 문제는 07, 0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ICCS 07의 대표적인 죄명인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하여 한국범죄분류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범죄행위를 과다포섭 혹은 과소포섭하게 되는 특별법 하나의 죄명코드를 ICCS와 연계할 경우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범죄분류와 엄격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ICCS의 행위에 대하여 과다포섭하고 있는 한국의 특별법에 대하여 구성요건들 마다 세분화한 죄명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세분화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포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ICCS와 연계하지 않게 되면, 특별법 위반으로 집계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통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엄격하게 국제범죄분류와 연계할 경우, 연계되지 않거나 제외되는 죄명코드의 범위가 늘어나 객관적인 한국의 범죄통계를 집계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ICCS ‘07032 횡령’에 배임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보다 포괄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단순히 남용하고 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는 범죄이다. 즉, ICCS ‘07032의 횡령’보다 과다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ICCS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ICCS ‘07032 횡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우리나라의 ‘업무상 횡령’만을 연계하고, 현행 법상 ‘횡령’과 ‘특경법(횡령)’를 ‘07039 기타 부패행위’에 포섭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적 왜곡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성격에 있어서 ICCS 중분류 0703에 포함된 ‘증수죄’는 해석상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로서 높은 정도의 타인의 신뢰를 배반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 ICCS가 정의하는 횡령도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자, 혹은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10) 관련 쟁점들은 연구수행 중 자문회의 및 월별 보고회의에 참여한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검찰, 경찰의 실무자 및 관련 학계의 교수 등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정리되었다.

자”라는 문언 해석을 근거로 엄격히 볼 때 위 증수죄와 동등하게 신뢰 배반의 정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업무상 횡령만을 연계시키고 ‘횡령’, ‘특경법(횡령)’은 연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통계의 왜곡을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

<표 12> 07032 횡령 연계 논의

07032	횡령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자, 혹은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가 자신의 직책상 위탁 받은 어떤 자산,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자금이나 증권, 혹은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 남용, 유용하는 행위 11)	+	포함: 공공 부문의 횡령; 민간 부문의 횡령; 남용; 자금 부정전환
		-	제외: 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무단침입하여 자산을 영득하는 행위(05); 개인적 이익 목적으로 한 사기 금융 거래를 수반한 행위(07011); 0703에 기재된 모든 제외 행위

이에 대해, 현행 법규와 ICCS 연계 시 과다포섭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대분류 수준에서의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발생 건수가 적은 특별법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발생 건수가 많은 특별법이 연계 불가되는 경우에는 통계 왜곡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ICCS 07032(횡령)과의 연계에 있어서 첫째, 배임죄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재판 실무상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단해야 할 것을 배임죄로 처단한 경우에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대판 89도1083). 나아가 공소장변경철차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99도2651). 더욱이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한 조문(형법355)에 두고 있으며 법정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이런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양자의 구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ICCS는 Embezzlement(07032)의 행위 태양으로 Embezzlement 이외에 diversion이나 misappropriation, dishonest conversion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배임행위의 전형적 예이다. 때문에 업무상배임을 ICCS의 횡령코드(07032)에 연계시키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둘째, ICCS 07032(횡령)의 연계에 업무상 횡령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 유형을 규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ICCS와 우리 죄명코드의 완전한 1:1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ICCS가 ‘행위중심’으로 범죄를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ICCS 07032(횡령)의 무게

11) 최소한으로 횡령이란, 부정하게 개인의 허가 없이 위임된 돈 또는 자산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최소한으로 남용이란, 부정하게 개인의 허가 없이 위임된 돈 또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중심은 ‘횡령행위’에 있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횡령을 제외하고 업무상 횡령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들은 ICCS 07032(횡령)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외에 ‘횡령’과 ‘배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CCS 07032(횡령)의 정의에 따르면 “~단체에서 지휘 또는 근무하는 자가 자신의 직책상 위탁받은”으로 되어 있고, 원문은 “~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 private sector entity of any property ~ by virtue of his or her position.”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계속성과 사회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ICCS 07032(횡령)의 ‘private sector entity’나 ‘position’이 우리 형법상의 ‘업무’와 같은 계속성, 반복성, 사회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ICCS 07032(횡령) 정의의 각주(103)에 따르면 단순히 ‘money or property entrusted to one’s care’라고 설명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민간부문의 단체에서 지휘 또는 근무하는 자’, ‘직책’으로 번역된 ICCS의 행위주체성 요건에 ‘횡령’과 ‘배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관계, 타인의 재산에 대한 사무처리관계(타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위자(피고인)와 재물위탁자 또는 사무위임자 간에는 법률상·사실상의 위탁관계 내지 사무처리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 즉, 횡령죄나 배임죄는 누구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이 위탁보관자 또는 사무처리자라는 행위주체로서의 요건이 필요한 진정신분범이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이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사무처리자 간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적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나 사기죄 등 다른 재산죄와 구별된다.

- 따라서 범죄의 특성상 최소한 2인 간의 ‘단체’로서의 관계가 필요하고, 행위자(피고인)은 그러한 내부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로서 혹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직책’을 부여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 물론 위탁자와 수탁자 2인 간의 관계를 ‘단체’로 보거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직책’으로, 수탁자를 ‘근무’한다고 보기에 그 문언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문의 ‘entity’나 ‘position’, ‘work’가 반드시 회사 등 일정 규모의 집단이나 계속적인 근무, 2인을 초과하는 사회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음. 위 용어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령죄나 배임죄의 행위주체성이나 범죄로서의 특성상 내포되어 있는 ‘위탁자와 수탁

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entity), ‘보관자 내지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position)’, ‘보관업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work)’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2. 기타 과다포섭에 따라 연계 불가능한 한국 죄명코드에 대한 논의

1) 부정수표단속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특별법 위반 등

과다포섭의 문제로 부정수표단속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대해 ICCS와 연계불가능한 부분의 논의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CCS 07011 등에서 과다포섭의 문제로 제외된 죄명코드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ICCS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죄명코드의 체계가 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특별법 안에 포함된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하여도 하나의 죄명코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ICCS 분류상의 행위유형과의 연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연계를 통해 국제 간 범죄통계의 비교, 범죄유형분류의 재정비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ICCS 분류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은 기타 범죄를 포함하는 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위 5개 범죄는 이상에서 본 기준에 따라 ICCS 0709에 연계하더라도 과다포섭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부수법위반의 경우, 부정수표 발행인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과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수표 및 부도수표 발행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국가경제질서의 보호, 신뢰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유형이므로 이를 ICCS 0709 기망, 부패, 사기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 외에 변호사의 임무나 자격, 권리와 의무, 법무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부분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ICCS 0709에 연계하는 것은 과다 포섭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²⁾

2) ICCS 대분류 08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12) 이에 대해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 형사처벌(동법111)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중수죄(07031)와 연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자문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0801)의 상당수는 경범죄처벌법과 관련된다. 특히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08012)로 예시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행위, 구걸행위, 쓰레기 등 투기,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행위는 모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열거된 행위(음주소란 등, 쓰레기 등 투기, 구걸행위, 인근소란 등)들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행위 외에도 ‘공무원 원조 불응, 과다 노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지문 채취불응’등의 다양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코드를 바로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에 포섭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ICCS 08042 상업이나 금융규제위반행위에 포함시켰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은 ICCS 07에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상표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은 과다포섭의 문제로 연계불가의 쟁점이 도출되었다.

3. 기타 연계상의 쟁점이 되는 법률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0214080900)은 금융상품의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ICCS의 범죄 분류 상 소분류인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2)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ICCS의 범죄 분류상 소분류인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거래(08045)에 해당된다. 이렇듯,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소분류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어느 곳에 분류해야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소분류 항목들에 중복 분류할 것인지, 중분류 항목(080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소분류인 공공행정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기타행위(09049)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요구된다.

<표 13> 080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연계 논의

080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와 도덕적·윤리적 근거로 규제되거나 금지된 행동과 관련된 행위		+	포함: 탈세; 기업범죄; 불법 도박; 08041-08049에 제시된 모든 행위
		-	제외: 사람의 태만이나 무모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상해 혹은 상해 가능성(0206); 사람의 위험한 행동으로 야기된 상해나 상해 가능성(0207); 사기, 기망 또는 부패를 수반한 행위(07); 문화적 재산 불법 밀매(07042)
08041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 세관, 조세 그리고 기타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	+	포함: 관세, 조세, 세금 및 수입 관련 범죄
		-	제외: 사회 복지 및 세금 사기와 사기, 기망, 또는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07); 이민자의 밀수(0805);0804에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8042	상사법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 상업·산업 혹은 재무규정에 반하는 행위	+	포함: 경쟁과 파산 범죄를 포함한 기업 범죄; 사기성 파산; 무역, 교역 공시, 수입/수출 범죄; 무역 규정, 규제 또는 금수조치에 반하는 행위; 투자 혹은 증권/주식 범죄(사기에 이르지 않는 정도); 고리대금업
		-	제외: 지적 재산 범죄(0503);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07);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0902);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10); 0804에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표 14>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연계 논의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¹³⁾ - 금융사기는 07011에 정의된 내용	+	포함: 담보 대출 사기; 증권 사기; 투자 사기; 은행 사기
		-	제외: 07011에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이에 대해 ICCS 08042의 범위에 투자 혹은 증권, 주식범죄(사기에 이르지 않은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법 행위 중 사기에 이르렀다면 대분류 07,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분류 0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 분류체계상 자본시장법 코드가 하나로 구성되어 07이나 08로 분류되더라도 여러 소분류에 해당되어 연계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

2) 기타 각종 경제, 금융규제 관련 특별법

대부업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대분류 07의 사기, 부패행위와 08의 상업, 금융규

13) 자연인은 법적으로 법인과 구분되는 존재이다. 법인은 법적인 조직, 회사, 공동체, 소유권, 신뢰 또는 계약이다. 법인은 계약을 수락, 의무 가정, 불법적인 활동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제중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

ICCS의 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법제도 침해와 관련된 행위들을 현재 우리나라의 죄명코드(주로 공무집행방해)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¹⁴⁾ 소분류인 사법 방해(08061) 행위는 ‘법정의 실현 방해’, ‘법 집행 공무원을 협박·위협’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형법 제163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형법 제164조)를 처벌하고 있다. 연계를 시도해보면, ICCS상의 ‘법 집행 공무원을 협박·위협’은 우리 형법 제163조의 행위를 어려움 없이 포섭한다. 그러나 ‘법정의 실현 방해’ 행위에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를 요한다. 큰 틀에서 분류하면 포섭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태양으로 명시적으로 ‘위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정의 실현 방해 행위’의 다양한 예들 중에 하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법방해 <09061>에 포함시키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4) 공무원자격사칭의 죄

공무원자격사칭의 경우 0701 기타 사기행위와 연계가 가능하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118)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를 ‘사기행위’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701 Fraud>는 기본적으로 기망을 통해 ‘금전이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룹이다. 그 하위유형으로 <07019, 기타 사기행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07019>도 <0701 Fraud>의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볼 때,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사칭’을 통해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금전적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등의 쟁점이 충돌한다.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통하여 ICCS 대분류 07과 08에 대한 연계 쟁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연계된 죄명에 대한 시산결과를 다음 절에서 제시하였다.

14)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II. ICCS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와 한국죄명코드의 연계

1. 사기(0701)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사기 행위’로서 ‘대출 사기, 금융 사기, 불법 무허가 의료 행위, 사칭, 신원 도용; 축정을 위한 부정 저울추 소지, 생성 혹은 사용하는 행위; 07011 - 07019 사이에 기재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금융 사기(07011)’, ‘기타 사기 행위(07019)’로 분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 사기(07011)는 개인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금융 거래를 수반하는 사기 행위로, 은행 계좌, 신용카드, 수표, 멤버십 카드 또는 온라인 banking 시스템 같은 금융고객 상품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 사기; 투자 사기; 수표 / 신용 카드 사기; 멤버십 카드 사기; 온라인 banking 사기; 부정수표발급 등이 포함되지만, 범죄 수익금을 은닉, 이전, 위장하기 위한 금융 거래(07041); 횡령(07032)은 제외된다.

이러한 금융사기는 보다 세분류되어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070111)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070112)로 나뉜다.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070111)에는 조달 및 계약업자 사기; 의료 사기에 이르지 않는 허위 청구 사기가 포함되며, 사회복지 보조금 및 세금 사기(08041)와 금융 사기(07011)에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는 동일하게 제외된다.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070112)에는 담보 대출 사기; 증권 사기; 투자 사기; 은행 사기가 포함되며, 금융 사기(07011)에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는 동일하게 제외된다.

기타 사기 행위(07019)는 허위 계량을 하기 위해 부정 저울추를 소지, 생성 혹은 사용하는 행위; 의료 과실 또는 의료 행위 태만에 이르지 않는 의료 사기나 무면허 의료 행위; 기망적 소비재 공급 불이행이나 사기를 통한 상품 획득 행위; 회계 부정; 금전을 은닉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송금 사기; 보험 사기; 거래나 직종에서의 무면허/무등록 행위; 신원 도용; 신원이나 전문적 신분 사칭 행위; 사칭; 사기성 가장 결혼; 다단계 사기 개설이나 운영 행위; 사취행위가 해당된다. 범죄 수익금을 은닉, 이전, 또는 위장하기 위한 금융 거래(07041); 횡령(07032); 부정 축재(07035); 세금 사기(08041) 등은 제외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형법 347조(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CS상 분류 범죄 행위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록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일지라도, 죄명 코드 분류의 차이로 인해 연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이는 비단 본장에서 다루는 ICCS 대분류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 산하 중분류 코드 0701 <사기>에 국한 되는 내용이 아닌 뒤이어 다룰 다른 중분류 코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동일한 연계 상 쟁점을 반복하며 모두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연계 상 쟁점을 지적하고, 연계의 방향을 모색 및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쟁점이 되는 ICCS와의 연계대상 한국범죄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법조문의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후 모든 예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연계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운 후부터는 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07011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형법범 컴퓨터등 사용사기 중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위 코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뿐만이 아닌 다른 전반적인 사기 행위를 모두 포섭하고 있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CCS상 소분류인 코드 07011 <금융사기>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연계의 문제는, 단지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ICCS상 07011부터 07019까지 다양한 소분류로 세분화되어 나뉘지는 ICCS 중분류 상 0701의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한국범죄분류상에서는 하나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같은 형태로, 다른 ICCS상 중분류인 0702 <위조>, 0703 <부패>, 0704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행위>에 속하는 행위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에 대한 코드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범죄분류상 하나의 코드가 ICCS상 다양한 소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세분화된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양한 행위들이 일관되게 ICCS상 하나의 중분류 하에 포함되는 행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범죄분류상 코드를 당해 ICCS상 중분류하의 포괄적 소분류 코드인 기타 코드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같이 일반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코드의 경우, ICCS상 소분류인 코드 07011 <금융사기>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더라도, ICCS상 중분류 0701 <사기>에 속한 포괄적인 사기 행위를 다루고 있는 소분류 코드인 07019 <기타 사기 행위>와는

연계시킬 수 있다. 이는 ICCS상 코드 연계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보이는 다른 한국범죄분류상 코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동일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가-2. 세부내용:

- 코드 9206023100 <특경법 위반>

제3조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나-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소분류인 코드 07011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특별법범 부정수표 발급 등 행위를 포섭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둘은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ICCS상 소분류인 코드 07011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발급 행위까지 이르지 않고 위변조에 그치는 행위, 허위 신고 행위,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불이행 등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한국범죄분류코드에서는 동일한 코드로 분류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1에서 예로 든 한국범죄분류상 020602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는 다르게,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는 엄격히 해석할 경우 ICCS상 소분류 코드 07019 <기타 사기 행위>에 뿐만 아니라 ICCS상 중분류 코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에 조차도 포섭시킬 수가 없다. 이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포함되는 허위 신고 행위,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불이행 등이 ICCS상 중분류 코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ICCS와 연계할 경우에는, ICCS상 07의 어느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도 포함될 수 없는 허위 신고 행위,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불이행 등이 마치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인 것처럼 시산되어, 과측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여, 이를 ICCS와 연계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ICCS상 07의 어느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든지

포함되어야 하는 부정수표 발급 행위 및 위변조 행위가 결측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동일한 연계의 문제는, 단지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ICCS상 01부터 11까지 나뉘지는 다양한 대분류에 걸치는 세분화된 행위들을 한국범죄분류상 하나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특별법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문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한국범죄분류상 코드의 대상이 되는 특별법의 주요 입법취지가 ICCS 분류에서 정하는 행위유형에 대한 금지 및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의 대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ICCS 범죄분류와 동일한 경우; 실무상 특별법위반 중 ICCS 범죄분류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만 주로 처벌되고 있어 연계하더라도 통계상의 차이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ICCS와 연계를 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하고자 하였다. 이때,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는 ICCS상 중분류 코드 0701 <사기> 행위와 중분류 코드 0702 <위조>에 포함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중분류 코드와 연계하지 않는 대신 ICCS상 대분류 코드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중분류 코드로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와 연계하였다. 이는 ICCS상 코드 연계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보이는 다른 한국범죄분류상 코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동일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굳이 반복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자 한다.

나-2. 세부내용:

- 코드 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코드 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제5조(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소분류인 코드 07011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특별법범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 등 행위를 포섭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둘은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사용 행위 뿐만 아니라, 위변조 행위 및 다른 기타 범죄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앞서 나-1에서 언급한 부정수표단속법과 마찬가지로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ICCS상 대분류 코드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중분류 코드로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와 연계하였다.

다-2. 세부내용:

-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 . .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 . . 사용한 자
4. 강취(強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嚇)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 . . 사용한 자.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제70조(벌칙) ① . .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070111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세분류인 코드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조달 및 계약업자 사기 행위가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범 코드 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 발주사업 대상 사기 뿐 아니라 일반 발주사업 대상 사기까지, 그리고 사기 행위 뿐 아닌 다른 형사 및 행정규제 위반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

류상 특별법법 코드 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는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 코드 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과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 . .

나-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세분류인 코드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조달 및 계약 사기 행위가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1009020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발주사업 대상 사기 뿐 아니라 일반 발주사업 대상 사기까지, 그리고 사기 행위 뿐 아닌 다른 형사 및 행정규제 위반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1009020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나-2. 세부내용:

- 코드 21009020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

다-1. 문제: (과다포섭) 가-1, 나-1과 동일한 이유로 본 건강보험 허위 청구 사기 외 다른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231050600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연계 불가하다.

다-2. 세부내용: 생략

[07011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세분류인 코드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사

기>에 해당할 수 있는 증권 및 일부 투자 사기 행위가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14080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둘은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증권 및 일부 투자 사기 행위 뿐 아닌 다른 형사 및 행정규제 위반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14080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19 관련 연계 생점]

가-1. 문제: (과다포섭) 본 분류에 해당할 수 있는 의료사기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29040100 <의료법위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의료사기나 무면허 의료행위 아닌 다른 형사 및 행정규제 위반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법 코드 229040100 <의료법위반>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 코드 229040100 <의료법> 위반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나-1. 문제: (과다포섭) 가-1과 동일한 이유로 본 분류 외 다른 여러 위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120060100 <위조공문서행사> 외 특별법상 코드 227040010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코드206010200<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코드 214040100 <보험업법위반>, 코드 205020200 <변호사법위반>, 코드 205010400 <법무사법위반>, 코드 210080100 <공인회계사법위반>, 코드 210020500 <공인중개사법위반>, 코드 232020600 <공인노무사법위반>, 214060200 <외국환거래법위반>, 코드 22503040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0230010100 <약사법위반> 등과 연계 불가하다.

반면에, 가-1과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도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같이,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1502050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위반>, 0228021300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2802160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 022802170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40060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등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였다.

나-2. 세부 내용: 생략

[연계 표] 위 쟁점으로 인해, ICCS와의 현행 우리나라 죄명코드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표 15> 사기(070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1 사기	ICCS 코드 07011~07019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16> 금융 사기(0701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11 금융사기	0139010200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ICCS 코드 070111~070112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17>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07011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	[형법] 연계 불가	
	[특별법]	
	0216020500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위반
	0216020501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위반교사
	0216020502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0217040100	애국지사사업기금법위반
	022802120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위반
	022803070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반
	0231020100	생활보호법위반
	023207010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위반

<표 18>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07011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	[형법] 연계 불가	
	[특별법]	
	0206013100	부실문서행사
	02230306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02230306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교사
	022303060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02230308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02230308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교사
	022303080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02090152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02090152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020901520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표 19> 기타 사기 행위(0701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19 기타 사기 행위	[형법]	
	사기	
	0139010100	사기교사
	0139010101	사기방조
	0139010102	준사기
	0139020100	준사기교사
	0139020101	준사기방조
	0139020102	부당이득
	0139030100	부당이득교사
	0139030101	부당이득방조
	0139030102	편의시설부정이용
	0139020200	편의시설부정이용교사
	0139020201	편의시설부정이용방조
	0139020202	

	공무원자격사칭
0105070100	공무원자격사칭교사
0105070101	공무원자격사칭방조
0105070102	
[특별법]	
0206023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0206023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교사
0206023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02060210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02060210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02060210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0206024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
02060240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교사
0206024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방조
0215020500	특수입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위반
0215020501	특수입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위반교사
0215020502	특수입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위반방조
0228021300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280213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2802130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2802160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
022802160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교사
022802160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방조
022802170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2802170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2802170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40060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2. 위조 행위(0702)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위조 행위는 가짜 모조품 또는 모조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전달, 사용 혹은 소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짜로 상품이나 문서, 통화를 제조, 조작하는 행위; 위조에 사용되는 도구, 물품,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수단들을 만들거나, 수령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상품, 통화 또는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수입, 수출, 수송, 수취 또는 취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짜 명의를 만들거나 또는 사칭하는 행위(07019); 위조된 비자 사용(0805); 허위 계량을 위해 부정 저울추를 소지, 생성 혹은 사용하는 행위(07019); 불법적인 복제, 사용, 재생산 또는 기타 침해행위를 통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0503); 상품밀수(08044) 등의 행위는 제외한다.

소분류로는 결제 수단의 위조(07021), 위조 제품 범죄(07022), 문서 위조 행위(07023), 위조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29)로 나누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제 수단의 위조(07021)에는 지폐 또는 동전의 위조; 도장 또는 승차권 등

표의 위조; 위조 결제수단을 만들기 위한 물품 소지 행위;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의 위조 등이 해당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결제 수단의 위조(07021)는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1),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2)로 나뉘어 진다.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1)는 지폐나 동전을 부정하게 제작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도구, 물품,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지폐나 동전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기타 수단을 부정하게 제조하거나,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위조된 정을 알면서 지폐와 동전을 수입, 수출, 수송, 수령 또는 취득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반면에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9); 금융 사기(07011);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2)로 비 현금 결제 수단의 불법 제작 또는 변경; 도구, 물품,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비현금 형태의 결제수단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기타 수단을 부정하게 제조하거나, 수령하거나, 획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위조된 정을 알면서 비현금 결제수단을 수입, 수출, 수송, 수취 혹은 취득한 행위를 포함하며, 현금 지불 수단의 위조(070211); 금융 사기(07011);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조 제품 범죄(07022)에는 위조 제품 범죄(가방, 신발, 의약품, 처방제품 포함); 위조 상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품 소지; 약품 위조; 제약품 위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약품 불순 혼합(02071); 상품 밀수(08044); 지적 재산 범죄(0503)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서 위조 행위(07022)에는 문서 위조; 여권 위조; 비자 위조나 위조된 비자 생산; 서명 위조; 위조 또는 변조 문서 생성 도구, 물품,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수단을 부정하게 생성, 수취, 획득 혹은 소지하는 행위; 위조된 정을 알면서 문서를 수입, 수출, 수송, 수취 혹은 취득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위조된 신원문서 사용 행위(0701); 불법 입국을 위한 위조 비자 혹은 여권 사용 행위(0805); 불법적 복제, 사용, 재생산 또는 기타 침해행위를 통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0503)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조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29)에는 허위 상품 또는 허위 상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생산, 제조, 전달, 사용 혹은 소지하는 행위 중 결제 수단의 위조(07021), 위조 제품 범죄(07022), 문서 위조 행위(07023)에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한국범죄분류 상 형법 위반 범죄인 코드 18010100 통화위조, 118010200 통화변조, 118020100 외국통화위조, 118020200 외국통화변조, 118030100 위조통화행사, 118030200 변조통화행사, 118040100 위조통화수입, 118040200 변조통화수입, 118050100 위조통화수출, 118050200 변조통화수출, 118060100 위조외국통화행사, 118060200 변조외국통화행사, 118070100 위조통화취득, 118070300 변조통화취득, 118070300 위조외국통화취득, 118080100 위조통화지정행사, 118080200 변조통화지정행사, 118080300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118110100 위조외국통화수입, 118110200 변조외국통화수입, 118120100 위조외국통화수출, 118120200 변조외국통화수출 등

및 특별법상 위반 범죄인 죄명 코드 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227020100 특허법위반, 227020200 실용신안법위반, 227030200 상표법위반, 2300302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60207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2060208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060209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유독물제조등), 0230010100 약사법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CS상 분류 범죄 행위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록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일지라도, 죄명 코드 분류의 차이로 인해 연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07021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세분류 코드 070212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에 해당하는 특별법범 수표, 신용카드 위변조, 사용 등 행위를 포섭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상 코드 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분류와는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위변조, 사용 행위 뿐 아니라 도난 사용 등 다른 위반 행위를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ICCS상 소분류 코드 07011 <금융사기>에서 다루었듯이, 한국범죄분류코드 상 코드 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코드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는 ICCS상 중분류 코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로 연계가 가능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2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소분류 코드 07022 <위조제품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한국범죄분류상 특별법범 코드 227020100 <특허법위반>, 227020200 <실용신안법위반>, 227030200 <상표법위반>, 2300302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60207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2060208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060209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유독물제조등)>, 0230010100 <약사법위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본 분류에 해당하는 위조제품범죄 행위가 아닌 다른 형사 및 행정규제 위반 행위들까지 포섭하는 특별법 전체 조항을 동일한 코드로 분류 기반으로 하고, 행위 별로 세분화된 코드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위 언급된 코드들은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연계 표] 위 쟁점들로 인해, ICCS와의 현행 우리나라 죄명코드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표 20> 위조 행위(070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 위조 행위	ICCS 코드 07021~07029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21> 결제 수단의 위조(0702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1 결제 수단의 위조 행위	ICCS 코드 070211~070212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22>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07021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11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	[형법]	
	통화위조	
	0118010100	통화위조교사
	0118010101	통화위조방조
	0118010102	통화변조
	0118010200	통화변조교사
	0118010201	통화변조방조
	0118010202	외국통화위조
	0118020100	외국통화위조교사
	0118020101	외국통화위조방조
	0118020102	외국통화변조
	0118020200	외국통화변조교사
	0118020201	외국통화변조방조
	0118020202	위조통화행사
	0118030100	위조통화행사교사
	0118030101	위조통화행사방조
	0118030102	변조통화행사
	0118030200	변조통화행사교사
	0118030201	변조통화행사방조
	0118030202	위조통화수입
	0118040100	위조통화수입교사
	0118040101	위조통화수입방조
	0118040102	변조통화수입
	0118040200	변조통화수입교사
	0118040201	변조통화수입방조
	0118040202	

위조통화수출	
0118050100	위조통화수출교사
0118050101	위조통화수출방조
0118050102	변조통화수출
0118050200	변조통화수출교사
0118050201	변조통화수출방조
0118050202	위조외국통화행사
0118060100	위조외국통화행사교사
0118060101	위조외국통화행사방조
0118060102	변조외국통화행사
0118060200	변조외국통화행사교사
0118060201	변조외국통화행사방조
0118060202	위조통화취득
0118070100	위조통화취득교사
0118070101	위조통화취득방조
0118070102	변조통화취득
0118070300	변조통화취득교사
0118070301	변조통화취득방조
0118070302	위조외국통화취득
0118070300	위조외국통화취득교사
0118070301	위조외국통화취득방조
0118070302	위조통화지정행사
0118080100	위조통화지정행사교사
0118080101	위조통화지정행사방조
0118080102	변조통화지정행사
0118080200	변조통화지정행사교사
0118080201	변조통화지정행사방조
0118080202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0118080300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교사
0118080301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방조
0118080302	위조외국통화수입
0118110100	위조외국통화수입교사
0118110101	위조외국통화수입방조
0118110102	변조외국통화수입
0118110200	변조외국통화수입교사
0118110201	변조외국통화수입방조
0118110202	위조외국통화수출
0118120100	위조외국통화수출교사
0118120101	위조외국통화수출방조
0118120102	변조외국통화수출
0118120200	변조외국통화수출교사
0118120201	변조외국통화수출방조
0118120202	통화위조미수
0118010110	통화위조미수교사
0118010111	통화위조미수방조
0118010112	통화변조미수
0118010210	통화변조미수교사
0118010211	통화변조미수방조
0118010212	외국통화위조미수
0118020110	외국통화위조미수교사
0118020111	외국통화위조미수방조
0118020112	외국통화변조미수
0118020210	외국통화변조미수교사
0118020211	외국통화변조미수방조
0118020212	

통화위조예비	
0118010120	통화위조예비 교사
0118010121	통화위조예비 방조
0118010122	통화변조예비
0118010220	통화변조예비 교사
0118010221	통화변조예비 방조
0118010222	외국통화위조예비
0118020120	외국통화위조예비 교사
0118020121	외국통화위조예비 방조
0118020122	외국통화변조예비
0118020220	외국통화변조예비 교사
0118020221	외국통화변조예비 방조
0118020222	통화유사물제조
0118090100	통화유사물제조교사
0118090101	통화유사물제조방조
0118090102	통화유사물제조미수
0118090110	통화유사물제조미수교사
0118090111	통화유사물제조미수방조
0118090112	통화유사물수입
0118090200	통화유사물수입교사
0118090201	통화유사물수입방조
0118090202	통화유사물수출
0118090300	통화유사물수출교사
0118090301	통화유사물수출방조
0118090302	통화유사물판매
0118100100	통화유사물판매교사
0118100101	통화유사물판매방조
0118100102	

[특별법]
연계 불가

<표 23>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 (07021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12 비 현금 결제 수단의 위조	[형법]	
	유가증권위조	
	0119010100	유가증권위조교사
	0119010101	유가증권위조방조
	0119010102	유가증권변조
	0119010200	유가증권변조교사
	0119010201	유가증권변조방조
	0119010202	위조유가증권행사
	0119040100	위조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101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40102	변조유가증권행사
	0119040200	변조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201	변조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40202	위조유가증권수입
	0119050100	위조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101	위조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50102	변조유가증권수입
	0119050200	

	변조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201	변조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50202	위조유가증권수출
0119060100	위조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101	위조유가증권수출방조
0119060102	변조유가증권수출
0119060200	변조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201	변조유가증권수출방조
0119060202	우표위조
0119070100	우표위조교사
0119070101	우표위조방조
0119070102	우표변조
0119070200	우표변조교사
0119070201	우표변조방조
0119070202	인지위조
0119070300	인지위조교사
0119070301	인지위조방조
0119070302	인지변조
0119070400	인지변조교사
0119070401	인지변조방조
0119070402	우편요금증표위조
0119070500	우편요금증표위조교사
0119070501	우편요금증표위조방조
0119070502	우편요금증표변조
0119070600	우편요금증표변조교사
0119070601	우편요금증표변조방조
0119070602	위조우표행사
0119080100	위조우표행사교사
0119080101	위조우표행사방조
0119080102	변조우표행사
0119080200	변조우표행사교사
0119080201	변조우표행사방조
0119080202	위조인지행사
0119080300	위조인지행사교사
0119080301	위조인지행사방조
0119080302	변조인지행사
0119080400	변조인지행사교사
0119080401	변조인지행사방조
0119080402	위조우편요금증표행사
0119080500	위조우편요금증표행사교사
0119080501	위조우편요금증표행사방조
0119080502	변조우편요금증표행사
0119080600	변조우편요금증표행사교사
0119080601	변조우편요금증표행사방조
0119080602	위조우표수입
0119090100	위조우표수입교사
0119090101	위조우표수입방조
0119090102	변조우표수입
0119090200	변조우표수입교사
0119090201	변조우표수입방조
0119090202	위조인지수입
0119090300	위조인지수입교사
0119090301	위조인지수입방조
0119090302	변조인지수입
0119090400	

	변조인지수입교사
0119090401	변조인지수입방조
0119090402	위조우편요금증표수입
0119090500	위조우편요금증표수입교사
0119090501	위조우편요금증표수입방조
0119090502	변조우편요금증표수입
0119090600	변조우편요금증표수입교사
0119090601	변조우편요금증표수입방조
0119090602	위조우표수출
0119100100	위조우표수출교사
0119100101	위조우표수출방조
0119100102	변조우표수출
0119100200	변조우표수출교사
0119100201	변조우표수출방조
0119100202	위조인지수출
0119100300	위조인지수출교사
0119100301	위조인지수출방조
0119100302	변조인지수출
0119100400	변조인지수출교사
0119100401	변조인지수출방조
0119100402	위조우편요금증표수출
0119100500	위조우편요금증표수출교사
0119100501	위조우편요금증표수출방조
0119100502	변조우편요금증표수출
0119100600	변조우편요금증표수출교사
0119100601	변조우편요금증표수출방조
0119100602	위조우표취득
0119110100	위조우표취득교사
0119110101	위조우표취득방조
0119110102	변조우표취득
0119110200	변조우표취득교사
0119110201	변조우표취득방조
0119110202	위조인지취득
0119110300	위조인지취득교사
0119110301	위조인지취득방조
0119110302	변조인지취득
0119110400	변조인지취득교사
0119110401	변조인지취득방조
0119110402	위조우편요금증표취득
0119110500	위조우편요금증표취득교사
0119110501	위조우편요금증표취득방조
0119110502	변조우편요금증표취득
0119110600	변조우편요금증표취득교사
0119110601	변조우편요금증표취득방조
0119110602	유가증권위조미수
0119010110	유가증권위조미수교사
0119010111	유가증권위조미수방조
0119010112	유가증권변조미수
0119010210	유가증권변조미수교사
0119010211	유가증권변조미수방조
0119010212	우표위조미수
0119070110	우표위조미수교사
0119070111	우표위조미수방조
0119070112	우표변조미수
0119070210	

	우표변조미수교사
0119070211	우표변조미수방조
0119070212	인지위조미수
0119070310	인지위조미수교사
0119070311	인지위조미수방조
0119070312	인지변조미수
0119070410	인지변조미수교사
0119070411	인지변조미수방조
0119070412	우편요금증표위조미수
0119070510	우편요금증표위조미수교사
0119070511	우편요금증표위조미수방조
0119070512	우편요금증표변조미수
0119070610	우편요금증표변조미수교사
0119070611	우편요금증표변조미수방조
0119070612	유가증권위조예비
0119010120	유가증권위조예비교사
0119010121	유가증권위조예비방조
0119010122	유가증권변조예비
0119010220	유가증권변조예비교사
0119010221	유가증권변조예비방조
0119010222	우표위조예비
0119070120	우표위조예비교사
0119070121	우표위조예비방조
0119070122	우표변조예비
0119070220	우표변조예비교사
0119070221	우표변조예비방조
0119070222	인지위조예비
0119070320	인지위조예비교사
0119070321	인지위조예비방조
0119070322	인지변조예비
0119070420	인지변조예비교사
0119070421	인지변조예비방조
0119070422	우표등유사물제조
0119130000	우표등유사물제조교사
0119130001	우표등유사물제조방조
0119130002	공채증서유사물제조
0119130100	공채증서유사물제조교사
0119130101	공채증서유사물제조방조
0119130102	공채증서유사물제조미수
0119130110	공채증서유사물제조미수교사
0119130111	공채증서유사물제조미수방조
0119130112	우표유사물제조
0119130200	우표유사물제조교사
0119130201	우표유사물제조방조
0119130202	우표유사물제조미수
0119130210	우표유사물제조미수교사
0119130211	우표유사물제조미수방조
0119130212	인지유사물제조
0119130300	인지유사물제조교사
0119130301	인지유사물제조방조
0119130302	인지유사물제조미수
0119130310	인지유사물제조미수교사
0119130311	인지유사물제조미수방조
0119130312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0119130400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교사
0119130401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방조
0119130402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미수
0119130410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미수교사
0119130411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미수방조
0119130412	우표등유사물수입
0119140000	우표등유사물수입교사
0119140001	우표등유사물수입방조
0119140002	공채증서유사물수입
0119140100	공채증서유사물수입교사
0119140101	공채증서유사물수입방조
0119140102	우표유사물수입
0119140200	우표유사물수입교사
0119140201	우표유사물수입방조
0119140202	인지유사물수입
0119140300	인지유사물수입교사
0119140301	인지유사물수입방조
0119140302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
0119140400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교사
0119140401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방조
0119140402	우표등유사물수출
0119150000	우표등유사물수출교사
0119150001	우표등유사물수출방조
0119150002	공채증서유사물수출
0119150100	공채증서유사물수출교사
0119150101	공채증서유사물수출방조
0119150102	우표유사물수출
0119150200	우표유사물수출교사
0119150201	우표유사물수출방조
0119150202	인지유사물수출
0119150300	인지유사물수출교사
0119150301	인지유사물수출방조
0119150302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
0119150400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교사
0119150401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방조
0119150402	우표등유사물판매
0119160000	우표등유사물판매교사
0119160001	우표등유사물판매방조
0119160002	공채증서유사물판매
0119160100	공채증서유사물판매교사
0119160101	공채증서유사물판매방조
0119160102	우표유사물판매
0119160200	우표유사물판매교사
0119160201	우표유사물판매방조
0119160202	인지유사물판매
0119160300	인지유사물판매교사
0119160301	인지유사물판매방조
0119160302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0119160400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교사
0119160401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방조
0119160402	
	[특별법]
	연계 불가

<표 24> 위조 제품 범죄 (0702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2 위조 제품 범죄	[형법범] 연계 불가 [특별법범] 연계 불가

<표 25> 문서 위조 행위 (07023)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3 문서 위조 행위	[형법범]
	0120010100 공문서위조
	0120010101 공문서위조교사
	0120010102 공문서위조방조
	0120010300 공도화위조
	0120010301 공도화위조교사
	0120010302 공도화위조방조
	0120030500 공전자기록등위작
	0120030501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0120030502 공전자기록등위작방조
	0120090100 사문서위조
	0120090101 사문서위조교사
	0120090102 사문서위조방조
	0120090300 사도화위조
	0120090301 사도화위조교사
	0120090302 사도화위조방조
	0120101300 사전자기기록등위작
	0120101301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0120101302 사전자기기록등위작방조
	0121010100 공인위조
	0121010101 공인위조교사
	0121010102 공인위조방조
	0121010200 공서명위조
	0121010201 공서명위조교사
	0121010202 공서명위조방조
	0121010300 공기명위조
	0121010301 공기명위조교사
	0121010302 공기명위조방조
	0121010400 공기호위조
	0121010401 공기호위조교사
	0121010402 공기호위조방조
	0121050100 사인위조
	0121050101 사인위조교사
	0121050102 사인위조방조
	0121050200 사서명위조
	0121050201 사서명위조교사
	0121050202 사서명위조방조
	0121050300 사기명위조
	0121050301 사기명위조교사
	0121050302 사기명위조방조

0121050400	사기호위조
0121050401	사기호위조교사
0121050402	사기호위조방조
0120010200	공문서변조
0120010201	공문서변조교사
0120010202	공문서변조방조
0120010400	공도화변조
0120010401	공도화변조교사
0120010402	공도화변조방조
0120030600	공전자기록등변작
0120030601	공전자기록등변작교사
0120030602	공전자기록등변작방조
0120090200	사문서변조
0120090201	사문서변조교사
0120090202	사문서변조방조
0120090400	사도화변조
0120090401	사도화변조교사
0120090402	사도화변조방조
0120101400	사전자기록등변작
0120101401	사전자기록등변작교사
0120101402	사전자기록등변작방조
0120010110	공문서위조미수
0120010111	공문서위조미수교사
0120010112	공문서위조미수방조
0120010310	공도화위조미수
0120010311	공도화위조미수교사
0120010312	공도화위조미수방조
0120030510	공전자기록등위작미수
0120030511	공전자기록등위작미수교사
0120030512	공전자기록등위작미수방조
0120090110	사문서위조미수
0120090111	사문서위조미수교사
0120090112	사문서위조미수방조
0120090310	사도화위조미수
0120090311	사도화위조미수교사
0120090312	사도화위조미수방조
0120101310	사전자기기록등위작미수
0120101311	사전자기기록등위작미수교사
0120101312	사전자기기록등위작미수방조
0121010110	공인위조미수
0121010111	공인위조미수교사
0121010112	공인위조미수방조
0121010210	공서명위조미수
0121010211	공서명위조미수교사
0121010212	공서명위조미수방조
0121010310	공기명위조미수
0121010311	공기명위조미수교사
0121010312	공기명위조미수방조
0121010410	공기호위조미수
0121010411	공기호위조미수교사
0121010412	공기호위조미수방조
0121050110	사인위조미수
0121050111	사인위조미수교사
0121050112	사인위조미수방조

0121050210	사서명위조미수
0121050211	사서명위조미수교사
0121050212	사서명위조미수방조
0121050310	사기명위조미수
0121050311	사기명위조미수교사
0121050312	사기명위조미수방조
0121050410	사기호위조미수
0121050411	사기호위조미수교사
0121050412	사기호위조미수방조
0120010210	공문서변조미수
0120010211	공문서변조미수교사
0120010212	공문서변조미수방조
0120010410	공도화변조미수
0120010411	공도화변조미수교사
0120010412	공도화변조미수방조
0120030610	공전자기록등변작미수
0120030611	공전자기록등변작미수교사
0120030612	공전자기록등변작미수방조
0120090210	사문서변조미수
0120090211	사문서변조미수교사
0120090212	사문서변조미수방조
0120090410	사도화변조미수
0120090411	사도화변조미수교사
0120090412	사도화변조미수방조
0120101410	사전자기기록등변작미수
0120101411	사전자기기록등변작미수교사
0120101412	사전자기기록등변작미수방조
[특별법] 연계 불가	

<표 26> 위조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2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29 위조와 관련된 기타 행위	[형법]	
	0119020000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011902000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교사
	011902000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방조
	0119020110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미수
	011902011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미수교사
	011902011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미수방조
	0119020120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예비
	0119020121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예비교사
	011902012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예비방조
	0119020200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
	0119020201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교사
	0119020202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방조
	0119020210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미수
	0119020211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미수교사
	0119020212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미수방조
	0119020220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예비
	0119020221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예비교사
	0119020222	자격모용유가증권기재예비방조

0119030100	허위유가증권작성
0119030101	허위유가증권작성교사
0119030102	허위유가증권작성방조
0119030110	허위유가증권작성미수
0119030111	허위유가증권작성미수교사
0119030112	허위유가증권작성미수방조
0119030200	유가증권허위기재
0119030201	유가증권허위기재교사
0119030202	유가증권허위기재방조
0119030210	유가증권허위기재미수
0119030211	유가증권허위기재미수교사
0119030212	유가증권허위기재미수방조
0119040300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0119040301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30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40400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0119040401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402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40500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011904050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50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40600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0119040601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교사
0119040602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방조
0119050300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입
0119050301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30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50400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입
0119050401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402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50500	허위작성유가증권수입
0119050501	허위작성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502	허위작성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50600	허위기재유가증권수입
0119050601	허위기재유가증권수입교사
0119050602	허위기재유가증권수입방조
0119060300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출
0119060301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302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수출방조
0119060400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출
0119060401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402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수출방조
0119060500	허위작성유가증권수출
0119060501	허위작성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502	허위작성유가증권수출방조
0119060600	허위기재유가증권수출
0119060601	허위기재유가증권수출교사
0119060602	허위기재유가증권수출방조
0120020100	자격모용공문서작성
0120020101	자격모용공문서작성교사
0120020102	자격모용공문서작성방조
0120020110	자격모용공문서작성미수
0120020111	자격모용공문서작성미수교사
0120020112	자격모용공문서작성미수방조

0120020200	자격모용공도화작성
0120020201	자격모용공도화작성교사
0120020202	자격모용공도화작성방조
0120020210	자격모용공도화작성미수
0120020211	자격모용공도화작성미수교사
0120020212	자격모용공도화작성미수방조
0120030100	허위공문서작성
0120030101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120030102	허위공문서작성방조
0120030110	허위공문서작성미수
0120030111	허위공문서작성미수교사
0120030112	허위공문서작성미수방조
0120030200	허위공문서변작
0120030201	허위공문서변작교사
0120030202	허위공문서변작방조
0120030210	허위공문서변작미수
0120030211	허위공문서변작미수교사
0120030212	허위공문서변작미수방조
0120030300	허위공도화작성
0120030301	허위공도화작성교사
0120030302	허위공도화작성방조
0120030310	허위공도화작성미수
0120030311	허위공도화작성미수교사
0120030312	허위공도화작성미수방조
0120030400	허위공도화변작
0120030401	허위공도화변작교사
0120030402	허위공도화변작방조
0120030410	허위공도화변작미수
0120030411	허위공도화변작미수교사
0120030412	허위공도화변작미수방조
012004010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012004010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교사
012004010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01200401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01200401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4011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4020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01200402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01200402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01200402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01200402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402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50100	면허장불실기재
0120050101	면허장불실기재교사
0120050102	면허장불실기재방조
0120050110	면허장불실기재미수
0120050111	면허장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50112	면허장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50200	감찰불실기재
0120050201	감찰불실기재교사
0120050202	감찰불실기재방조
0120050210	감찰불실기재미수
0120050211	감찰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50212	감찰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50300	여권불실기재
0120050301	여권불실기재교사
0120050302	여권불실기재방조
0120050310	여권불실기재미수
0120050311	여권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50312	여권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50400	허가증불실기재
0120050401	허가증불실기재교사
0120050402	허가증불실기재방조
0120050410	허가증불실기재미수
0120050411	허가증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50412	허가증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50500	등록증불실기재
0120050501	등록증불실기재교사
0120050502	등록증불실기재방조
0120050510	등록증불실기재미수
0120050511	등록증불실기재미수교사
0120050512	등록증불실기재미수방조
0120060500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0120060501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교사
0120060502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방조
0120060600	자격모용작성공도화행사
0120060601	자격모용작성공도화행사교사
0120060602	자격모용작성공도화행사방조
0120060700	허위작성공문서행사
0120060701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0120060702	허위작성공문서행사방조
0120060800	허위작성공도화행사
0120060801	허위작성공도화행사교사
0120060802	허위작성공도화행사방조
0120061000	허위변작공도화행사
0120061001	허위변작공도화행사교사
0120061002	허위변작공도화행사방조
012007010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012007010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교사
012007010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방조
0120070200	불실기재면허장행사
0120070201	불실기재면허장행사교사
0120070202	불실기재면허장행사방조
0120070300	불실기재감찰행사
0120070301	불실기재감찰행사교사
0120070302	불실기재감찰행사방조
0120070500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12007050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012007050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0120070600	불실기재허가증행사
0120070601	불실기재허가증행사교사
0120070602	불실기재허가증행사방조
0120070700	불실기재등록증행사
0120070701	불실기재등록증행사교사
0120070702	불실기재등록증행사방조
012010010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0120100101	자격모용사문서작성교사
012010010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방조

01201001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미수
012010011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미수교사
01201001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미수방조
0120100200	자격모용사도화작성
0120100201	자격모용사도화작성교사
0120100202	자격모용사도화작성방조
0120110100	허위진단서작성
0120110101	허위진단서작성교사
0120110102	허위진단서작성방조
0120110110	허위진단서작성미수
0120110111	허위진단서작성미수교사
0120110112	허위진단서작성미수방조
0120110200	허위검안서작성
0120110201	허위검안서작성교사
0120110202	허위검안서작성방조
0120110210	허위검안서작성미수
0120110211	허위검안서작성미수교사
0120110212	허위검안서작성미수방조
0120110300	허위증명서작성
0120110301	허위증명서작성교사
0120110302	허위증명서작성방조
0120110310	허위증명서작성미수
0120110311	허위증명서작성미수교사
0120110312	허위증명서작성미수방조
0120060100	위조공문서행사
0120060101	위조공문서행사교사
0120060102	위조공문서행사방조
0120060200	변조공문서행사
0120060201	변조공문서행사교사
0120060202	변조공문서행사방조
0120060300	위조공도화행사
0120060301	위조공도화행사교사
0120060302	위조공도화행사방조
0120060400	변조공도화행사
0120060401	변조공도화행사교사
0120060402	변조공도화행사방조
0120061400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0120061401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012006140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0120061500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0120061501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0120061502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0120120100	위조사문서행사
0120120101	위조사문서행사교사
0120120102	위조사문서행사방조
0120120200	변조사문서행사
0120120201	변조사문서행사교사
0120120202	변조사문서행사방조
0120120300	위조사도화행사
0120120301	위조사도화행사교사
0120120302	위조사도화행사방조
0120120400	변조사도화행사
0120120401	변조사도화행사교사
0120120402	변조사도화행사방조

0120121000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0120121001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012012100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0120121100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0120121101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0120121102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0120120500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012012050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교사
012012050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방조
0120120600	자격모용작성사도화행사
0120120601	자격모용작성사도화행사교사
0120120602	자격모용작성사도화행사방조
012012070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0120120701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0120120702	허위작성진단서행사방조
0120120800	허위작성검안서행사
0120120801	허위작성검안서행사교사
0120120802	허위작성검안서행사방조
0120120900	허위작성증명서행사
0120120901	허위작성증명서행사교사
0120120902	허위작성증명서행사방조
0121020100	공인부정사용
0121020101	공인부정사용교사
0121020102	공인부정사용방조
0121020110	공인부정사용미수
0121020111	공인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20112	공인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20200	공서명부정사용
0121020201	공서명부정사용교사
0121020202	공서명부정사용방조
0121020210	공서명부정사용미수
0121020211	공서명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20212	공서명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20300	공기명부정사용
0121020301	공기명부정사용교사
0121020302	공기명부정사용방조
0121020310	공기명부정사용미수
0121020311	공기명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20312	공기명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20400	공기호부정사용
0121020401	공기호부정사용교사
0121020402	공기호부정사용방조
0121020410	공기호부정사용미수
0121020411	공기호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20412	공기호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30100	위조공인행사
0121030101	위조공인행사교사
0121030102	위조공인행사방조
0121030200	위조공서명행사
0121030201	위조공서명행사교사
0121030202	위조공서명행사방조
0121030300	위조공기명행사
0121030301	위조공기명행사교사
0121030302	위조공기명행사방조

0121030400	위조공기호행사
0121030401	위조공기호행사교사
0121030402	위조공기호행사방조
0121040100	부정사용공인행사
0121040101	부정사용공인행사교사
0121040102	부정사용공인행사방조
0121040200	부정사용공서명행사
0121040201	부정사용공서명행사교사
0121040202	부정사용공서명행사방조
0121040300	부정사용공기명행사
0121040301	부정사용공기명행사교사
0121040302	부정사용공기명행사방조
0121040400	부정사용공기호행사
0121040401	부정사용공기호행사교사
0121040402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
0121060100	사인부정사용
0121060101	사인부정사용교사
0121060102	사인부정사용방조
0121060110	사인부정사용미수
0121060111	사인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60112	사인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60200	사서명부정사용
0121060201	사서명부정사용교사
0121060202	사서명부정사용방조
0121060210	사서명부정사용미수
0121060211	사서명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60212	사서명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60300	사기명부정사용
0121060301	사기명부정사용교사
0121060302	사기명부정사용방조
0121060310	사기명부정사용미수
0121060311	사기명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60312	사기명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60400	사기호부정사용
0121060401	사기호부정사용교사
0121060402	사기호부정사용방조
0121060410	사기호부정사용미수
0121060411	사기호부정사용미수교사
0121060412	사기호부정사용미수방조
0121070000	사인위조행사
0121070001	사인위조행사교사
0121070002	사인위조행사방조
0121070100	위조사인행사
0121070101	위조사인행사교사
0121070102	위조사인행사방조
0121070200	위조사서명행사
0121070201	위조사서명행사교사
0121070202	위조사서명행사방조
0121070300	위조사기명행사
0121070301	위조사기명행사교사
0121070302	위조사기명행사방조
0121070400	위조사기호행사
0121070401	위조사기호행사교사
0121070402	위조사기호행사방조

0121080100	부정사용사인행사
0121080101	부정사용사인행사교사
0121080102	부정사용사인행사방조
0121080200	부정사용사서명행사
0121080201	부정사용사서명행사교사
0121080202	부정사용사서명행사방조
0121080300	부정사용사기명행사
0121080301	부정사용사기명행사교사
0121080302	부정사용사기명행사방조
0121080400	부정사용사기호행사
0121080401	부정사용사기호행사교사
0121080402	부정사용사기호행사방조
[특별법] 연계 불가	

3. 부패(0703)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부패 행위에서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서 뇌물 증수죄 행위(07031), 횡령(07032), 직권 남용(07033), 영향력 거래(07034), 불법적인 부의 축적(07035), 기타 부패 행위(07039)으로 분류된다.

뇌물 증수죄 행위(07031)에는 공무원의 뇌물 증수죄; 외국 또는 국제적 기구 공무원의 뇌물 증수죄; 민간 부문의 뇌물 증수죄 등이 해당되지만, 위력, 협박, 위협, 정보 누설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협박을 통해 증수죄를 저지를 것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 행위(0205)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다 세분류로서 뇌물 증죄(070311)와 뇌물 수죄(070312)로 구분된다. 뇌물 증죄(070311)는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약속, 제공, 증여하는 행위이고, 뇌물 수죄(070312)는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목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이다.

횡령(07032)은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자, 혹은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가 자신의 직책상 위탁받은 어떤 자산,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자금이나 증권, 혹은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 남용, 유용하는 행위로서, 공공 부문의 횡령; 민간 부문의 횡령; 남용; 자금 부정전환을 포함하며, 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무단침입하여 자산을 영득하는 행위(05); 개인적 이익 목적으로 한 사기 금융 거래를 수반한 행위(07011)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권 남용(07033)은 스스로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이득을(undue advantage) 취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

작위하는 행위로서, 직권의 남용; 정실 주의; 권력의 남용; 공무소의 남용; 공적 지위의 남용 등을 포함한다.

영향력 거래(07034)는 공무원이나 누군가가(the person) 부당한 이득 취득 관련 실제 혹은 예정된 영향력을 남용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공무원에게 약속, 제공, 증여하거나 공무원이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이다.

불법적인 부의 축적(07035)는 공적 또는 사적영역의 업무자가 그들의 법적 소득으로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히 증가 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사기 등과 같은 행위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부패 행위(07039)는 뇌물 증수죄 행위(07031), 횡령(07032), 직권 남용(07033), 영향력 거래(07034), 불법적인 부의 축적(07035)에 포함되지 않는 부패행위로, 이해상충 행위나 금전 부정전용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우리 형법 위반 범죄인 죄명 107140100 뇌물공여, 107140200 뇌물공여약속 , 107140300 뇌물공여의사표시, 107140400 사전뇌물공여 , 107140500 사전뇌물공여약속, 107140600 사전뇌물공여의사표시, 107140700 제3자뇌물공여, 107140800 제3자뇌물공여약속 , 107140900 제3자뇌물공여의사표시, 107141000 사후뇌물공여 , 107141100 사후뇌물공여약속 , 107141200 사후뇌물공여의사표시 , 107150100 제3자뇌물교부, 107160100 가중뇌물공여 , 107160200 가중뇌물공여약속 , 107160300 가중뇌물공여의사표시, 0140060100 배임 증재 등 및 특별법상 위반 범죄인 죄명 0206023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코드 22504120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0411085000 군재산배임증재, 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코드206010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0206010700 상법위반, 214040100 보험업법위반, 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0214020100 은행법위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CS상 분류 범죄 행위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록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일지라도, 죄명 코드 분류의 차이로 인해 연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070311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상 세분류인 코드 070311 <뇌물증뢰>에 해당하는 증뢰 관련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동 분류와 연계되지 않는 수뢰, 그리고 기타 뇌물죄 외 다

른 여러 위반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한국범죄분류 상 코드 0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0206010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0206010700 <상법위반>, 0214040100 <보험업법위반>, 0214020100 <은행법위반> 등은 본 분류와 상호 연계 불가하다.

나아가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위 언급된 코드들은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나-1. 문제: (불일치) ICCS상 세분류인 코드 070311 <뇌물증뢰>에 증뢰 대상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인자가 아닌 “될” 자로 정하고 있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107140400 <사전뇌물공여>, 107140500 <사전뇌물공여약속>, 107140600 <사전뇌물공여의사표시>가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엄격한 문언 해석상으로만 보면, 이러한 사전증뢰는 ICCS상 본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ICCS상 포함되지 않는 범죄 행위들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ICCS와 연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 사전증뢰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상 코드들 또한 동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른 분류 코드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다.

나-2. 세부내용: 생략.

[07031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206023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채등)>의 경우 ICCS상 세분류 070312 <수뢰>에 포함되지 않는 알선까지 같은 코드에 포함시켜, 연계가 불가하다.

다만,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206023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채등)>의 경우에 본 ICCS상 세분류 070312 <수뢰>와는 연계할 수 없지만, 대신 ICCS상 수뢰 뿐만 아니라 알선까지 포함할 수 있는 ICCS상 중분류 0703 <부패> 행위의 포괄적 소분류 코드 07039 <기타 부패 행위>에 연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본 분류의 수뢰 관련 행위 외 증뢰, 그리고 기타 뇌물죄 및 사기, 위조 등과 관련 없는 다른 여러 위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6010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29040100 <의료법> 위반, 0206010700 <상법위반>, 206010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14040100 <보험업법위반>, 210080100 <공인회계사법위반> 등 또한 본 분류에 연계할 수 없다. 이는 위 코드들이 ICCS

대분류 07 하의 여러 분류들과 연계할 수 없었던 앞서의 이유들과 동일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3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ICCS 상 소분류 코드 07032 횡령은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자, 혹은 민간 부문의 단체에서 지휘(direct) 또는 근무(work)하는 자가 자신의 직책상 위탁받은 어떤 자산,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자금이나 증권, 혹은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 남용, 유용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어, 단순히 우리나라 형법상 횡령에 속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배임의 일부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140020100 <배임죄>는 앞서의 ICCS상 횡령에서의 “위탁받은 어떤 자산,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자금이나 증권, 혹은 기타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 남용, 유용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남용하고 유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대상 행위를 과다포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ICCS와 연계할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는 대표권 남용을 통한 임무 위배 행위 등과 같은 ICCS상 코드 07032 <횡령>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들까지 시산되어, 과측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여, 이를 ICCS와 연계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ICCS상 07032 <횡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남용 및 유용 행위가 결측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과연 ICCS가 산출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선택도 갈리게 될 것인 바, 본 연구에서는 자문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140020100 <배임죄>을 ICCS상 코드 07032 <횡령>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33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107010100 <직무유기>와 01070201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6022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020602980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직무유기)> 및 206030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들은 ICCS상 코드 07033 <직권남용>에서 요구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 ICCS상 분류보다 과다 포섭하고 있다.

이에 엄격한 문언상의 해석에 의하면, 앞서 과다 포섭을 하는 다른 여러 코드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이하 행위들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국범죄분류상 위 코드들을 ICCS상 코드와 연계할 경우 부당한 이득

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행위까지 시산하게 되는 과측치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행위까지 시산에서 빠지게 되는 결측치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ICCS상 분류는 발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고 발생단계에서는 앞서의 ICCS상 횡령 단계와 같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지위와 같은 요건이 아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석을 완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 둘을 연계하였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34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 코드 0206023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020602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경우, 알선의 주체로서 부당한 이득의 증수위를 공무원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본 ICCS상 07034 <영향력 거래> 분류는 이를 공무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한국범죄분류 코드들은 ICCS상 07034 <영향력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들까지 과다 포섭한다. 이에 위 한국범죄분류 코드들의 경우에 본 ICCS상 07034 <영향력 거래>와는 연계할 수 없지만, 대신 ICCS상 07034 <영향력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알선수재까지 포함할수 있는 ICCS상 중분류 0703 <부패> 행위의 포괄적 소분류 코드 07039 <기타 부패 행위>로 연계할 수 있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35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 코드 0203030200 <공직자윤리법위반> 관련, 동법 제25조 위반이 가장 본 ICCS 상 코드 07035 <불법적인 부의 축적>과 근접하나, 증가된 자산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고 단순히 설명되지 않는 증가 자산 취득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 연계 불가하며, 또한 동일 행위가 처벌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른 여러 종류의 위반행위들과 같은 코드로 과다 포섭되어 있어, 연계 불가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39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본 ICCS상 코드 07039 <기타 부패 관련 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206010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0206010700 <상법위반>, 214040100 <보험업법위반>, 0214020100 <은행법위반> 등은 이미 반복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계 불가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연계 표] 위 쟁점으로 인해, ICCS와의 현행 우리나라 죄명코드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표 27> 부패(0703)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 부패	ICCS 코드 07031~07039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28> 뇌물증수죄(0703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1 뇌물증수죄	ICCS 코드 070311~070319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29> 뇌물 증죄(07031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11 뇌물 증죄	[형법]
	0107140100 뇌물공여
	0107140101 뇌물공여교사
	0107140102 뇌물공여방조
	0107140102 뇌물공여약속
	0107140200 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40201 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40202 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40300 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40301 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0107140302 사전뇌물공여
	0107140400 사전뇌물공여교사
	0107140401 사전뇌물공여방조
	0107140402 사전뇌물공여약속
	0107140500 사전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40501 사전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40502 사전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40600 사전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40601 사전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0107140602 제3자뇌물공여
	0107140700 제3자뇌물공여교사
	0107140701 제3자뇌물공여방조
	0107140702 제3자뇌물공여약속
	0107140800 제3자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40801 제3자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40802 제3자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40900 제3자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40901

제3차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0107140902	사후뇌물공여
0107141000	사후뇌물공여교사
0107141001	사후뇌물공여방조
0107141002	사후뇌물공여약속
0107141100	사후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41101	사후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41102	사후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41200	사후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41201	사후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0107141202	제3차뇌물교부
0107150100	제3차뇌물교부교사
0107150101	제3차뇌물교부방조
0107150102	가중뇌물공여
0107160100	가중뇌물공여교사
0107160101	가중뇌물공여방조
0107160200	가중뇌물공여약속
0107160201	가중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60202	가중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60300	가중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60301	가중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60302	가중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0140060100	배임증재
0140060101	배임증재교사
0140060102	배임증재방조
[특별법]	
0206023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
0206023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교사
0206023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방조
022504120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표 30> 뇌물 수뢰(07031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12 뇌물 수뢰	[형법]	
	0107080100	뇌물수수
	0107080101	뇌물수수교사
	0107080102	뇌물수수방조
	0107080200	뇌물요구
	0107080201	뇌물요구교사
	0107080202	뇌물요구방조
	0107080300	뇌물약속
	0107080301	뇌물약속교사
	0107080302	뇌물약속방조
	0107090000	사전수뢰
	0107090001	사전수뢰교사
	0107090002	사전수뢰방조
	0107090200	사전뇌물요구
	0107090201	사전뇌물요구교사

0107090202	사전뇌물요구방조
0107090300	사전뇌물약속
0107090301	사전뇌물약속교사
0107090302	사전뇌물약속방조
0107100100	제3자뇌물수수
0107100101	제3자뇌물수수교사
0107100102	제3자뇌물수수방조
0107100200	제3자뇌물요구
0107100201	제3자뇌물요구교사
0107100202	제3자뇌물요구방조
0107100300	제3자뇌물약속
0107100301	제3자뇌물약속교사
0107100302	제3자뇌물약속방조
0107110100	가중뇌물수수
0107110101	가중뇌물수수교사
0107110102	가중뇌물수수방조
0107110200	가중뇌물요구
0107110201	가중뇌물요구교사
0107110202	가중뇌물요구방조
0107110300	가중뇌물약속
0107110301	가중뇌물약속교사
0107110302	가중뇌물약속방조
0107110400	수뢰후부정처사
0107110401	수뢰후부정처사교사
0107110402	수뢰후부정처사방조
0107120100	사후뇌물수수
0107120101	사후뇌물수수교사
0107120102	사후뇌물수수방조
0107120200	사후뇌물요구
0107120201	사후뇌물요구교사
0107120202	사후뇌물요구방조
0107120300	사후뇌물약속
0107120301	사후뇌물약속교사
0107120302	사후뇌물약속방조
0107120400	부정처사후수뢰
0107120401	부정처사후수뢰교사
0107120402	부정처사후수뢰방조
0107150200	제3자뇌물취득
0107150201	제3자뇌물취득교사
0107150202	제3자뇌물취득방조
0140050100	배임수재
0140050101	배임수재교사
0140050102	배임수재방조

<표 31> 횡령(0703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2 횡령	[형법범]
	0140020100 배임
	0140020101 배임교사
	0140020102 배임방조

횡령	
0140010100	횡령교사
0140010101	횡령방조
0140010102	업무상횡령
0140030100	업무상횡령교사
0140030101	업무상횡령방조
0140030102	업무상배임
0140040000	업무상배임교사
0140040001	업무상배임방조
0140040002	
[특별법]	
발기인이사기타의임원등의특별배임	
0206013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0206025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02060258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0206025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0206023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
0206023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0206023302	국유재산법위반
0210030100	국유재산법위반방조
0210030102	
020602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표 32> 직권 남용(07033)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3 직권 남용	[형법]	
	0107010100	직무유기
	0107010101	직무유기교사
	0107010102	직무유기방조
	01070201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01070201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교사
	01070201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0107050100	피의사실공표
	0107050101	피의사실공표교사
	0107050102	피의사실공표방조
	0107060100	공무상비밀누설
	0107060101	공무상비밀누설교사
	0107060102	공무상비밀누설방조
	[특별법]	
	0206030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0206030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교사
	0206030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방조
	0206022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020602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교사
	0206022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방조
	020602980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직무유기)
	0206030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0206030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교사
	0206030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방조

0206039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0210020400	국가재정법위반

<표 33> 영향력 거래(07034)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4 영향력 거래	[형법]
	0107130100 알선뇌물수수
	0107130101 알선뇌물수수교사
	0107130102 알선뇌물수수방조
	0107130200 알선뇌물요구
	0107130201 알선뇌물요구교사
	0107130202 알선뇌물요구방조
	0107130300 알선뇌물약속
	0107130301 알선뇌물약속교사
	0107130302 알선뇌물약속방조
	0107141300 알선뇌물공여
	0107141301 알선뇌물공여교사
	0107141302 알선뇌물공여방조
	0107141400 알선뇌물공여약속
	0107141401 알선뇌물공여약속교사
	0107141402 알선뇌물공여약속방조
	0107141500 알선뇌물공여의사표시
	0107141501 알선뇌물공여의사표시교사
	0107141502 알선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특별법] 연계불가

<표 34> 불법적인 부의 축적(07035)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5 불법적인 부의 축적	[형법] 연계 불가 [특별법] 연계불가

<표 35> 기타 부패 행위(0703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39 기타 부패 행위	[형법] 연계불가 [특별법]

0206023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0206023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교사
0206023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0206023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0206023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교사
0206023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0206023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02060238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교사
0206023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
020602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020602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
020602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020602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0206024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교사
0206024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1203030700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위반
02050105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02050105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050105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06023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0206023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교사
0206023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방조
022405100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 관한법률위반
022405100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240510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16021100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위반
0216021101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160211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19020500	한국과학기술원법위반
0219020700	한국과학재단법위반
021902080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위반
0223040400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위반
0223040401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23040402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230405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022304050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교사
02230405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방조
0228070200	한국도로공사법
0228090600	한국수자원공사법위반
0229024300	환경관리공단법위반
0232050200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위반
0232060200	근로복지공사법위반
0233020100	교통안전진흥공단법위반
0233080200	한국관광공사법위반
023402050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
02340205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교사
02340205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방조
0219070100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위반
0219070101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19070102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20050200	한국방송공사법위반
022102240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위반

0224050600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
0224050601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교사
022405060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25040300	대한무역진흥공사법위반
0225060200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위반
0226020500	한국전력공사법위반
0238030100	긴급복지지원법위반
0238030101	긴급복지지원법위반교사
0238030102	긴급복지지원법위반방조
0332060600	한국산업안전공단법
033206070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0321021700	농수산물유통공사법
0218040200	학교보건법위반
0218040202	학교보건법위반방조
0219010100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위반
021805020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위반
0219020400	특정연구기관육성법위반
0219021000	기술이전촉진법위반

4.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를 직접, 간접적으로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금전 또는 재물을 수취, 취급, 또는 가공하는 행위로서 도난 물건 또는 돈의 소유 및 소분류의 돈 세탁 행위(07041), 불법 문화재 매매(07042),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기타 행위(07049)가 해당된다.

소분류인 돈 세탁 행위(07041)는 자산의 불법적 출처를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 혹은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을 원조할 목적으로, 그 자산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거나, 자산의 본질, 출처, 장소, 처분, 이동 또는 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로서, 자산의 전환 또는 이송; 자산과 관련된 정보의 은닉 또는 위장; 세탁된 자산의 불법 획득, 소지, 또는 사용; “자가 세탁”; 범죄 수익금의 은닉 또는 지속된 보유 등이 포함된다.

불법 문화재 매매(07042)는 행위는 문화 자산의 불법 판매, 배급, 유통, 배달, 중개, 이송, 수입, 수출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서, 문화재 불법 매매; 절도나 가치 손상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문화적, 예술적 물건에 대한 범죄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문화재 불법 취득(0502); 수입/수출 범죄(08042); 세관 범죄(08041)는 제외된다.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기타 행위(07049)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 또는 재물을 수령, 취급, 혹은 처리하는 행위 중 돈 세탁 행위(07041), 불법 문화재 매매(07042)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로서, 장물 또는 절취 금원 소지; 장물 수령, 취급, 처리, 판매 또는 매매하는 행위, 장물을 이용해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자동차 재생산), 장물 은닉 등을 포함한

다. 자산의 불법 취득(0502) 등은 제외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한국범죄분류 상 형법 위반 범죄인 코드 0141010100 장물취득, 0141010200 장물양여, 0141010300 장물운반, 0141010400 장물보관, 0141020100 장물알선, 0141030100 상습장물취득, 0141030200 상습장물양여, 0141030300 상습장물운반, 0141030400 상습장물보관, 0141030500 상습장물알선, 01410401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0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여, 0141040300 업무상과실장물운반, 0141040400 업무상과실장물보관, 0141040500 업무상과실장물알선, 0141040600 중과실장물취득, 0141040700 중과실장물양여, 0141040800 중과실장물운반, 0141040900 중과실장물보관, 0141041000 중과실장물알선 등 및 특별법상 위반 범죄인 코드 02060339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02170303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0206025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장물), 411085300 군용장물취득, 0411085400 군용장물양여, 0411085500 군용장물운반, 0411085600 군용장물보관, 0411085700 군용장물알선, 0411085800 상습군용장물취득, 0411085900 상습장물취득양여, 0411086000 상습장물취득운반, 0411086100 상습장물취득보관, 0411086200 상습장물취득알선등, 0411086300 업무상과실군용장물취득, 0411086400 업무상과실군용장물양여, 0411086500 업무상과실군용장물운반, 0411086600 업무상과실군용장물보관, 0411086700 업무상과실군용장물알선, 0411086800 중과실군용장물취득, 0411086900 중과실군용장물양여, 0411087000 중과실군용장물운반, 0411087100 중과실군용장물보관, 0411087200 중과실군용장물알선, 1141010200 장물양도, 1141030200 상습장물양도, 1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도, 1141040700 중과실장물양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CS상 분류 범죄 행위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비록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일지라도, 죄명 코드 분류의 차이로 인해 연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07041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339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는 본 분류인 ICCS상 코드 07041 <돈세탁>에서 정하는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행위까지 포함하는 과다포섭을 하고 있어,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는 위 둘은 연계 불가하다.

하지만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도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같이,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339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한 동 요건을 충

족한다고 보고 본 분류에서는 연계를 하였다.

가-2. 세부내용: 생략

[07042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170303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에는 본 분류인 ICCS상 코드 07042 <불법문화재매매>에서 정하는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도굴 행위 자체 및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 위반, 신고 의무 위반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과다포섭을 하고 있어,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는 위 둘은 연계 불가하다.

유사한 연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도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ICCS와 연계를 시켰던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과 달리,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339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 분류에서는 연계를 하지 않았다.

가-2. 세부내용: 생략

[연계 표] 위 쟁점들로 인해, ICCS와의 현행 우리나라 죄명코드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표 36>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4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	ICCS 코드 07041~07049와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코드

<표 37> 돈 세탁(0704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41 돈세탁	[형법법] 연계불가
	[특별법법]
	02060339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20603390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0603390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표 38> 불법 문화재 매매(0704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42 불법 문화재 매매	[형법범] 연계불가 [특별법범] 연계불가

<표 39>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기타 행위(07049)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49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기타 행위	[형법범]	
	0141010101	장물취득교사
	0141010102	장물취득방조
	0141010200	장물양여
	0141010201	장물양여교사
	0141010202	장물양여방조
	0141010300	장물운반
	0141010301	장물운반교사
	0141010302	장물운반방조
	0141010400	장물보관
	0141010401	장물보관교사
	0141010402	장물보관방조
	0141020100	장물알선
	0141020101	장물알선교사
	0141020102	장물알선방조
	0141030100	상습장물취득
	0141030101	상습장물취득교사
	0141030102	상습장물취득방조
	0141030200	상습장물양여
	0141030201	상습장물양여교사
	0141030202	상습장물양여방조
	0141030300	상습장물운반
	0141030301	상습장물운반교사
	0141030302	상습장물운반방조
	0141030400	상습장물보관
	0141030401	상습장물보관교사
	0141030402	상습장물보관방조
	0141030500	상습장물알선
	0141030501	상습장물알선교사
	0141030502	상습장물알선방조
	01410401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01410401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교사
	0141040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방조
	0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여
	0141040201	업무상과실장물양여교사
	0141040202	업무상과실장물양여방조
	0141040300	업무상과실장물운반
	0141040301	업무상과실장물운반교사
	0141040302	업무상과실장물운반방조

0141040400	업무상과실장물보관
0141040401	업무상과실장물보관교사
0141040402	업무상과실장물보관방조
0141040500	업무상과실장물알선
0141040501	업무상과실장물알선교사
0141040502	업무상과실장물알선방조
0141040600	중과실장물취득
0141040601	중과실장물취득교사
0141040602	중과실장물취득방조
0141040700	중과실장물양여
0141040701	중과실장물양여교사
0141040702	중과실장물양여방조
0141040800	중과실장물운반
0141040801	중과실장물운반교사
0141040802	중과실장물운반방조
0141040900	중과실장물보관
0141040901	중과실장물보관교사
0141040902	중과실장물보관방조
0141041000	중과실장물알선
0141041001	중과실장물알선교사
0141041002	중과실장물알선방조
[특별법]	
0206025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물)
0206025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물)교사
0206025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물)방조
1141010200	장물양도
1141010201	장물양도교사
1141010202	장물양도방조
1141030200	상습장물양도
1141030201	상습장물양도교사
1141030202	상습장물양도방조
1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도
1141040201	업무상과실장물양도교사
1141040202	업무상과실장물양도방조
1141040700	중과실장물양도
1141040701	중과실장물양도교사
1141040702	중과실장물양도방조

5.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9)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9)로서 사기(0701), 위조 행위(0702), 부패 행위(0703),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행위(0704)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기망 행위 또는 부패, 사기 행위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시를 들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제외되는 행위로써 다른 대분류에 포함되고 있는 입양사기(020291); 성행위 알선을 위한 기망행위(030112); 정부보조금 및 세금사기(08041); 파산사기(08042); 세관사기(08044); 이민사기(0805); 선거사기(08079)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본 ICCS상 중분류 코드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에 연계되는 한국범죄분류상 코드들은 순수하게 이미 각 앞서의 ICCS상 중분류 코드 0701 <사기>부터 0704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행위>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들을 다루는 코드들 뿐 만 아니라, 앞서의 ICCS상 중분류 코드 0701 <사기>부터 0704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행위>까지 중 하나의 중분류에서만 포섭되지 않고 다양한 중분류에 걸치는 여러 행위들까지 다루고 있는 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0709 관련 연계 쟁점]

가-1. 문제: (과다포섭) 이미 ICCS상 코드 07011 <금융사기> 부분에서의 관련 연계 쟁점에서 예로 들어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범죄분류상 코드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는 ICCS상 중분류 코드 0701 <사기> 행위와 중분류 코드 0702 <위조>에 포함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중분류 코드와 연계할 수가 없다. 이를 ICCS상 중분류 코드 0701 <사기> 행위로 연계할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 중에서 ICCS상 중분류 코드 0702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사기 행위로 포함되어 시산되게 되는 과측치가 발생되며, 반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 중에서 위조 행위는 ICCS상 중분류 코드 0702 <위조>로 시산되지 않는 결측치가 발생하게 된다.

대신 ICCS상 대분류 코드 07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중분류 코드로서 본 분류인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가-2. 세부내용: 생략

[연계 표] 위 쟁점들로 인해, ICCS와의 현행 우리나라 죄명코드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표 4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070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형법범]		
	연계 불가		
	[특별법범]		
		신탁법위반	
	0208010500	신탁법위반교사	
	0208010501	신탁법위반방조	
	0208010502	농작물재해보험법위반	
	0214040400	국민투자기금법위반	
	021407010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021502010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502010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5020102			

	고엽제후유이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0215020200	고엽제후유이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5020201	고엽제후유이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502020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15020300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502030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502030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1502040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502040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5020402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위반
0217020700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7020701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702070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급법위반
022102210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급법위반
0221022800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0221040200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급법위반
0224050400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0224051700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24051701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2405170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
0225020700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25021000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25021001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25021002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25021200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25021201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25021202	국제공항관리공단법위반
0233010100	아이돌봄지원법위반
0238050300	아이돌봄지원법위반교사
0238050301	아이돌봄지원법위반방조
0238050302	장애인연금법위반
0238060100	장애인연금법위반교사
0238060101	장애인연금법위반방조
0238060102	기초연금법위반
0238060200	기초연금법위반교사
0238060201	기초연금법위반방조
02380602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02140214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021402140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02140214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02060212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교사
02060212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
0206021202	

Ⅲ. ICCS 08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와 한국죄명코드의 연계

1.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 (0801)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구걸행위’, ‘쓰레기 등 투기범죄’, ‘불법 집회 조직’, ‘폭력행위’¹⁵⁾와 매뉴얼 08011-08019에 열거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08011)’,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08012)’, ‘공공질서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08019)’로 분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08011)는 조직적 또는 즉흥적이고¹⁶⁾ 대중에게 심각한 혼란, 두려움 또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폭동, 폭력적인 무질서 행위, 소란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싸움, 폭력행위, 스포츠 경기에서의 폭력적인 행동 등이 포함되지만, 상해 또는 상해 위협을 야기하는 정도의 무력을 사용하지만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0201)는 제외된다.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08012)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 무질서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모욕적인 언행,¹⁷⁾ 부랑행위, 구걸행위, 쓰레기 등 투기, 공공연한 장난, 종교적 집회 방해, 배회, 소음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취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02072), 규제받는¹⁸⁾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 표현(08032), 소음이나 진동을 통한 환경오염(1001),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11021)는 제외된다.

공공질서 및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08019)는 불법 집회 조직, 불법 집회 가담, 불법 집회에 가담하도록 고용, 불법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¹⁹⁾ 소유하거나 점유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 116조(다중불해산),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경범죄처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5) 기존 연구 ‘hooliganism’은 ‘무법행위’로 번역했으나 ‘무법행위’라는 표현은 법률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hooliganism’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16) 기존 연구는 ‘spontaneous’를 ‘자발적’으로 번역했으나, 비계획적으로 나타나는 폭력행위를 의미하므로 ‘즉흥적’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17) 기존 연구는 ‘offensive language or behaviour’을 ‘불쾌한 언행’으로 번역했으나 ‘모욕적인 언행’이 보다 자연스러워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18) 기존 연구는 ‘controlled social belief’는 ‘통제된 사회적 믿음’으로 번역했으나 ‘규제받는 사상’이 보다 적절한 용어로 판단되어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19) 기존 연구는 ‘the property where the unlawful assembly is held’는 ‘불법집회의 자산’으로 번역했으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불법집회가 열리는 장소의 부동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연계 쟁점 1] ICCS와 우리나라의 해당 법률을 연계하면서 관련 법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CCS 08장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우리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적 법익 내지 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그치는 경우에는 선불리 ICCS 08장과 연계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의 예로, 우리나라의 소요죄(형법 115조), 다중불해산죄(형법11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폭행)등을 제안하고 있다.²⁰⁾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폭행)은 가급적 ICCS 02장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법익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CCS의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08011)에서 상해나 손해 또는 상해·손해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무력을 사용하지만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0201)를 제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속하는 행위들을 대부분 02장과 연계시키고 있다.²¹⁾

[연계 쟁점 2]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의 상당수는 경범죄처벌법과 관련된다. 특히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08012)로 예시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 구걸행위, 쓰레기 등 투기,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행위는 모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열거된 행위(음주소란 등, 쓰레기 등 투기, 구걸행위, 인근소란 등)들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행위 외에도 ‘공무원 원조 불응, 과다 노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지문채취불응’등의 다양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코드를 바로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에 포섭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진들은 ICCS와 우리나라 죄명코드와의 완벽한 1대1 연계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계하는 것이 국가 간 범죄통계의 비교, 범죄유형분류의 재정비 등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들로는 특별법의 주요 입법취지, 처벌하고 있는 행위 유형, 통계상의 왜곡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연계여부를 검토한 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입법취지가 경미하게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간이한 처벌절차 마련에 의의가 있고, 처벌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도 대부분 공공질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상의 왜곡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 최대현 등 3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 48면.

21) 장소영 등 7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2018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51-66면.

[연계 쟁점 3] 공공질서 및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는 불법 집회 조직, 불법 집회 가담, 불법 집회에 가담하도록 고용, 불법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소유하거나 점유가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과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과다포섭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범위반 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처벌조항도 많기 때문에 모든 집시법위반 행위를 동 항목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집시법 제22조(벌칙)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집시법상의 집회 미신고 행위를 바로 ICCS의 ‘불법 집회 조직’ 행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는 추가 검토를 요한다.

그러나 바로 위의 쟁점에서 설명한 기준들에 따라서 집시법의 입법취지, 처벌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 통계상의 왜곡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집시법을 공공질서 및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0801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형법]	
	0105030000	소요
	0105040000	다중불해산
	0409140010	특수소요수괴
	0409140200	특수소요지휘
	0409140300	특수소요부화뇌동
	[특별법]	
	0206020100	경범죄처벌법위반
	0206020101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0206020102	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

<표 42>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0801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12 사회적·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형법]	
	1112010100	장례식방해
	1112010101	장례식방해교사
	1112010102	장례식방해방조

기준과 관련된 행위	1112010200	제사방해
	1112010201	제사방해교사
	1112010202	제사방해방조
	[특별법]	
	0206020100	경범죄처벌법위반
	0206020101	경범죄처벌법위반교사
0206020102	경범죄처벌법위반방조	

<표 43> 공공질서 및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0801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19 공공질서 및 규범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형법]	
	0105030000	소요
	0105040000	다중불해산
	[특별법]	
	020804010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02080401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080401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	

2.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0802)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음란물이나 성매매 범죄; 불법적 형태의 성교와 매뉴얼 08021-08029에 제시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성매매 범죄(08012), 음란물 범죄(08022),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29)로 나누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범죄(08021)에는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성적 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성관광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성관광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람을 착취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거나 매춘부를 착취하는 행위(0302), 아동 성매매(030222)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란물 범죄(08022)에는 불법 음란물을 위해 사람을 알선·주선·조종 및 통제 하는 행위, 불법 음란물을 생산·제작·배포·보급·방송·전파·판매 혹은 소지하는 행위, 음란한 자료²²⁾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아동 음란물(030221), 성매매를 위한 채용 혹은 유인하거나 매춘부를 착취하는 행위(0302)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29)에는 공연음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인 행위,

22) 기존 연구는 'obscene material'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료'로 번역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은 물건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건 자체의 특징은 아니므로 '음란한 자료'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노출증, 불법적인 형태의 성교, 강간이나 성폭행에 포함되지 않는 근친상간 혹은 가족간 성범죄, 불법적인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적 행위, 수간, 시간증, 이중결혼, 일부다처, 간통, 유해한 성적 본능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남색행위, 외설적인 글, 그림 또는 물건 등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형법245조(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는 죄), 형법243조(음화등 반포, 판매, 공연전시, 공연상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특별법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계 쟁점 1]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ICCS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와 상당히 유사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의 소분류로는 성매매 범죄, 음란물 범죄,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ICCS 제3장의 성적 착취의 예로는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적 행위로 금전적, 사회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한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아동 포르노 그라피, 아동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하는 등의 행위)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성풍속과 관련된 법률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기존 연구에서 ICCS 매뉴얼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리되어 연구되는 바람에 일관된 연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²³⁾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제3장에서 다루는 성범죄의 특징과 08장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들의 특성에 따라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여 성풍속과 관련된 법률을 연계하였다.

[연계 쟁점 2] 이어서 구체적인 연계 기준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ICCS의 3장에서처럼 악의적인 성적 착취 또는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는지만,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면 성매매범죄(08021)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득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아동 성관광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성관광 등을 예시하고 있다. 반면 사람을 착취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거나 매춘부를 착취하는 행위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음란물범죄(08022) 또한 단순 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아동 음란물 등 비난 가능성 높은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29)는 공연음란, 근친상간, 간통 등 건전한 성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이는 문화권에 따라 구체적

23) 장다혜 등 3인,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2016년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137-179면; 최대현 등 3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 33-38면.

인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한 성매매알선 등도 3장의 행위에 포함시켜놓고 있는데,²⁴⁾ 본 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4> 성매매범죄(0802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21 성매매범죄	[형법]	
	[특별법]	
	0231011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0231011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02080519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표 45> 음란물 범죄(0802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22 음란물 범죄	[형법]	
	0122030000	음화등반포
	0122030200	음란문서반포
	0122030300	음란물건반포
	0122030400	음란필름반포
	0122040000	음화등판매
	0122040200	음란문서판매
	0122040300	음란물건판매
	[특별법]	
	2235050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02060329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0206058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02080519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표 46>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2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29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형법]	
	0122110100	공연음란
	0122110101	공연음란교사
	0122110102	공연음란방조
	0112020100	사채오욕
	0142010100	재물손괴
	[특별법]	

24) 강소영 등 7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2018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103-107면.

3.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0803)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에서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서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08031), 규제받는 사상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08032),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기타 행위(08039)로 분류된다.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08031)에는 불법적인 검열, 불법적인 연설의 자유 제한, 불법적인 예술의 자유 제한이 해당되지만, 무력, 협박, 위협, 폭로나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연설의 자유 제한(0205)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받는 사상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08032)는 하위 단위인 세분류로 종교적 믿음/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080321),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080322), 규제받는 사상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된 기타 행위(080329)를 두고 있다.

종교적 믿음/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는 신성모독, 배교, 개종이 포함되지만, 차별(0210), 피해자의 귀속적 믿음이나 가치에 기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02092)은 해당되지 않는다.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인종적, 종교적 증오 촉진, 종교적 증오 조장, 편파적 발언, 폭력 미화, 혐오 메일이 해당되고, 다른 사람의 명성, 신뢰 등을 해하거나, 적대감, 불쾌감을 조성한 자의 불법적인 편협성과 증오 조장 표현(0209), 차별(0210)은 제외된다. 규제받는 사상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된 기타 행위의 예로는 제한된 정치적 견해나 물질을 선전, 촉진 또는 보급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기타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연계 쟁점 1] 기존 연구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08031)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을 적시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규제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인 반헌법적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러나 ICCS와 우리 법률간 연계에 있어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위헌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 장에서는 사전검열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ICCS 매뉴얼에서 어떻게 분류 되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권에 의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공무원이 이에 위반하여 검열을 할 경우의 처벌 조항 등을 살펴보고 연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연설의 자유 제한, 불법적인 예술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같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적법한 신고·개최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25) 최대현 등 3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연구용역, 55면

아마도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이와 같은 행위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다포섭의 문제가 생긴다. 물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다포섭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연계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통계 왜곡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기본법 등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뒤이은 대책으로 향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죄명 연계는 입법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 됨이 바람직하다.²⁶⁾

[연계 쟁점 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08032)의 세분류인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080322)이 예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혐오범죄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켜 볼 필요가 있다. 범죄분류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단일한 기준을 통하여 각국의 범죄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죄명코드에서 별도로 혐오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혐오범죄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본 항목과 연계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를 ICCS의 분류에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죄명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계상의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7>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0803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31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통제와 관련된 행위	[형법법] [특별법법] ※ 우리 형법·특별법 체계상 연계 대상을 찾기 어려움

26)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조항 만든다...공무원, 부당지시 거부 의무

<표 48> 규제받는 사상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0803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32 규제받는 사상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형법범]	
	0133010000	명예훼손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33030000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협오범죄(협박죄와 폭행죄의 결합범)등의 경우 연계 가능할 수 있음	
[특별법범]		
2235050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표 49>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기타 행위(0803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39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기타 행위	[형법범]	
	[특별법범]	
※ 본 소분류의 행위는 08031, 08032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을 포함하지만, 우리 형법·특별법 체계상 연계 대상을 찾기 어려움		

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0804)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로서 탈세, 기업범죄, 불법도박과 매뉴얼 08041-08049에 제시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08041), 상사규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2),²⁷⁾ 도박 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3), 밀수입(08044),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08045), 공공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49)가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관세, 조세, 세금 및 수입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되지만, 정부보조금 및 세금 관련사기, 기망 또는 부패와 관련된 기타행위(07), 이민자를 밀입국시키는 행위(0805)등은 제외된다.

상사규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는 경쟁과 파산 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 사기성 파산, 무역, 교역 공시, 수입/수출 범죄, 무역 규정, 규제 또는 금수조치에 반하는 행위, 투자 혹은 증권/주식 범죄(사기에 이르지 않는 정도), 고리대금업이 포함된다. 반면 지적 재산 범죄(0503),

27) 기존 연구는 ‘act against commercial or financial regulation’을 ‘상업규정 또는 재무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번역하였으나 ‘상사규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사기, 기망 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07), 건강과 전을 해하는 행위(0902), 자연환경을 하는 행위(10)는 제외된다.

도박 규제에 반하는 행위는 도박 및 사행과 관련된 범죄가 해당된다. 밀수입 행위는 밀수입, 불법적인 밀수품 암거래가 포함되지만, 수입/수출 범죄(08042), 상품 위조(07022)는 제외된다.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에는 내부 정보(내부 거래)에 기인한 금융 상품 거래, 부적절한 시장 관련 정보 공개, 시장 관련 정보의 오용, 시장 거래 조작, 가격고정 행위가 해당된다. 공공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기타 행위에는 문화유산 오용; 문화적 기념물의 파괴 또는 손상; 공공행정에 반하는 기타 행위가 포함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 형법과 특별법에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해당되는 법률으로는 대부업법, 유사수신행위법, 전자금융거래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제246조(도박죄),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증권거래법, 국민체육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해당될 수 있다.

[연계 쟁점 1] 특별법의 경우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분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분류가 문제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금융상품의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ICCS의 범죄 분류 상 소분류인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2)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ICCS의 범죄 분류상 소분류인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 이렇듯,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소분류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어느 곳에 분류해야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연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분류에 중복 분류할 것인지, 중분류 항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소분류인 공공행정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기타행위(09049)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범죄분류에 있어 1대1연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분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 규제에 반하는 포괄적인 행위와 연계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거래의 분류와 연계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거래와 연계하고자 한다.

<표 50>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0804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1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	[형법]	
	[특별법]	
	0211050100	조세범처벌법위반
	0211050101	조세범처벌법위반교사
	0211050102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020602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0206022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교사
	020602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020602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
	020602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0207040100	지방세법위반
	0311030300	소득세법
	0311030200	법인세법
	0211050200	조세특례제한법위반

<표 51> 상사규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2)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2 상사규제 또는 금융규제에 반하는 행위	[형법]	
	[특별법]	
	0208010300	이자제한법위반
	0208010301	이자제한법위반교사
	0208010302	이자제한법위반방조
	0214080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0214080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방조
	0206011200	과산법위반
	0206011300	화의법위반
	0206011400	회사정리법위반
	0225040100	무역거래법위반
	0225040700	대외무역법위반
	0225040701	대외무역법위반교사
	0225040702	대외무역법위반방조

<표 52> 도박 규제에 반하는 행위(08043)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3 도박 규제에 반하는 행위	[형법]	
	0123010000	도박
	0123010101	도박교사
	0123010102	도박방조
	0123030000	도박개장
	0123030300	도박장소개설
	0123030300	도박공간개설
	[특별법]	
	02200212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02180319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02180324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02180325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0222050100	한국마사회법위반
	022205030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022205020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0208052000	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

<표 53> 밀수입(08044)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4 밀수입	[형법]	
	[특별법]	
	0212020100	관세법위반
	0212020100	관세법위반교사
	0212020100	관세법위반방조
	0212020100	관세법위반미수
	020602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
	0206022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교사
	020602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

<표 54>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08045)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5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형법]	
	[특별법]	
	214080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2140809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표 55> 공공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기타 행위(0804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49 공공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기타 행위	[형법]	
	[특별법]	
	0220030100	문화재보호법위반
	02170303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021703030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703030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방조
	021703040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021703040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021703040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5. 이민과 관련된 행위(0805)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이민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주자 밀거래, 불법 입국,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 또는 수용, 이민사기, 08051-08059에 제시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이주자 밀입국 범죄(08051),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08059)가 해당된다. 그러나 인신매매(0204), 불법 입양(020291), 위조된 비자, 여권 또는 기타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창조, 제조, 판매, 소유하는 행위(07023)는 제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자 밀입국 범죄는 이주자 밀입국 범죄 및 밀입국한 이주자를 숨겨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기타 이민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는 불법 입국/불법 국경 횡단; 입국을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 하는 행위,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 및 수용,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직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벌칙)에서는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93조의2(벌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출입국을 알선하거나 출입국에 이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연계 쟁점 1] 특별법에 대한 범죄분류 어려움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는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알선한 사람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ICCS 범죄분류 상 이주자 밀입국 범죄(08051)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된 행위들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ICCS의 범죄분류 상 기타 이민관련 불법 행위(08059)에 해당된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다포섭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특

별법과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한 기준들을 적용할 때, 출입국관리법을 연계함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표 56> 이주자 밀입국 범죄(0805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51 이주자 밀입국 범죄	[형법]	
	[특별법]	
	0205020300	출입국관리법위반
	0205020301	출입국관리법위반교사
	0205020302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표 57>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0805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형법]	
	[특별법]	
	※ 우리 형법·특별법 체계상 연계 대상을 찾기 어려움	

6.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0806)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체포 면탈 행위, 보석 조건 위반, 법정의 실현 방해, 위증, 구금 상태에서 도주, 법원 명령 위반, 법정모독, 배심원 소환 불응, 교정규범위반, 범죄 행위 가장/증거 위조, 08061-08069에 제시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는 행위(0201)는 본 분류에서 제외된다. 소분류로는 사법방해(08061), 사법 명령 위반(08062), 범의(08093), 범죄 음모(08064), 사법 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08069)가 해당된다.

소분류인 사법방해는 법정의 실현 방해, 법정 출두나 배심원 소환 불응, 위증, 증거 파괴·손상·위조·조작, 목격자를 방해, 협박 혹은 기망, 법 집행 공무원을 협박·위협, 범죄 행위 가장, 범죄 신고 불이행, 허위 정보 제공, 교사 방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해당된다.

사법 명령 위반으로는 체포 면탈 행위, 보석 조건 위반, 구금 상태에서 도주, 가택 연금 상태에서 도주, 법원 명령 위반, 가석방 규정 위반, 보호관찰 위반, 가정폭력이나 다른 금지 명령 위반, 법원이 부과한 제재 위반, 추방이나 망명으로 부터 불법 귀환, 법정 모독, 투옥 후 감독 관련 범죄가 해당된다.

범의는 범죄자와 교류하거나 도구, 물질 등을 소유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행위로서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불법적 소유, 변장 도구 불법 소유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조직화된 범죄 그룹의 활동에 참여(0905)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 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음모를 꾸미거나, 어울리거나 계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살인 음모(0101), 불법 낙태 주선 음모(0105), 내란 음모(0904)는 제외된다.

사법 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는 지금까지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로서 법정 모욕, 법 집행관 모욕, 교정 규정 위반, 범죄 교사 등이 해당된다.

[연계 쟁점 1] 본 장에서의 ICCS의 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법제도 침해와 관련된 행위들을 현재 우리나라의 죄명코드(주로 공무원집행 방해)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²⁸⁾ 소분류인 사법 방해(08061) 행위는 ‘법정의 실현 방해’, ‘법 집행 공무원을 협박·위협’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공무원집행방해에 관한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형법 제163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형법 제164조)를 처벌하고 있다. 연계를 시도해보면, ICCS상의 ‘법 집행 공무원을 협박·위협’은 우리 형법 제163조의 행위를 어려움 없이 포섭한다. 그러나 ‘법정의 실현 방해’행위에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를 요한다. 큰 틀에서 분류하면 포섭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는 행위 태양으로 명시적으로 ‘위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범죄 분류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개념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입법취지 및 처벌범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들도 연계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연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계 쟁점 2] 사법방해에 대한 분류에 있어 신분범과 관련된 쟁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분류인 사법 방해(08061)는 ‘증거 파괴·손상·위조·조작’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형법 155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의 경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고, 그것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행위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한 연계의 기준에서 이러한 부분이 별도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ICCS와 우리 실정법의 세부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연계시킬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범죄 분류에 있어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구분 없이 연계하기로 한다.

28)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연계 쟁점 3] ICCS 8장은 ‘범의’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목은 범의지만 내용은 범의를 갖고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예비 내지 음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총론적 성격의 범죄분류는 8장의 범죄분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8장에서만 별도의 분류를 두고 있는 지 매뉴얼에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항목으로 연계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58> 사범방해(0806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61 사범방해	[형법범]	
	0108010000	공무집행방해
	0108010101	공무집행방해교사
	0108010102	공무집행방해방조
	0108020100	위계공무집행방해
	0108020101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108020102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0110010100	위증
	0110040100	증거인멸
	0111010100	무고
	[특별법범]	

<표 59> 사범 명령 위반(08062)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62 사범 명령 위반	[형법범]	
	0109010100	도주
	0109010101	도주교사
	0109010102	도주방조
	[특별법범]	
	0206034000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0209011600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0206055700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법률위반
	020603280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별법위반

<표 60> 범의(08093)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93 범의	[형법범] [특별법범] ※ '범의' 소분류와는 별도로 연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표 61> 범죄 음모(08064)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64 범죄 음모	[형법범] [특별법범] ※ '범죄 음모' 소분류와는 별도로 연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표 62> 사법 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0806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69 사법 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형법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0108030100</td> <td>법정모욕</td> </tr> <tr> <td>0108030200</td> <td>법정소동</td> </tr> </table> [특별법범]	0108030100	법정모욕	0108030200	법정소동
0108030100	법정모욕				
0108030200	법정소동				

7. 민주적인 선거와 관련된 행위(0807)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민주적인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서 투표 매수, 선거 사기, 선거 자금 법률, 08071-08079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08071),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기타 행위(08079)로 나누어진다.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08071)에는 투표 매수, 투표 강요가 해당 되지만, 민주적 선거와 관련 없는 특정 행동을 위협, 상해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해 요구하는 행위(0205)민주적 선거와 관련이 없는 속임수,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 혹은 기타 이익을 취득하거나 책임을 회피 하는 행위(0701)는 제외된다.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기타 행위(08079)에는 선거 사기, 선거자금관련 법률위반, 선거기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민주적 선거와 관련이 없는 속임수,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 혹은 기타 이익을 취득하거나 책임을 회피 하는 행위(0701)는 제외된다.

<표 63>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08071)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71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	[형법]	
	0107070100	선거방해
	[특별법]	
	1207020600	공직선거법위반
	0201020100	국민투표법위반
	0207020800	주민투표법위반
	0207021100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표 64>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기타 행위(0807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79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기타 행위	[형법]	
	[특별법]	
	02070206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201020300	정치자금법위반

8.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0808)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법 위반, 산업 법규 위반, 최저 임금 위반, 아동 노동, 부당한 전직과 해고, 08081-08082에 제시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소분류로는 노동법 위반(08081), 개별적 노동법 위반(08082)으로 나누어진다.

<표 65> 노동법 위반(08081)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81 노동법 위반	[형법]	
	[특별법]	
	0232020200	노동조합법위반
	02320302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표 66> 개별적 노동법 위반(08082)과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2 개별적 노동법 위반	[형법]	
	[특별법]	
	0232030300	최저임금법위반
	0232030100	근로기준법위반

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0809)

ICCS 매뉴얼은 중분류인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결혼지참금을 주고 받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포함한 가족법 관련 규정(가정 폭력 범죄나 아동방임 혹은 유기 범죄 제외), 주권, 국가, 국기에 대한 모욕, 출생신고 불이행, 발견 아동 신고 불이행, 아동 교환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표 67>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0809)와의 죄명코드 연계

ICCS 분류	한국범죄분류	
080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형법]	
	0103010100	국기모독
	0103010101	국기모독교사
	0103010102	국기모독방조
	[특별법]	

IV. ICCS 대분류 07, 08에 대한 시산 결과

ICCS 중분류 '0701 사기'의 시산 결과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사기에 포함되는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건수가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07011 금융사기 발생건수의 대다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위반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금융사기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행위가 과다포섭의 문제로 연계불가 처리되어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행위로 연계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사기 범죄 건수가 연간 7천-1만 5천여건 내외로 집계되고, ICCS 분류체계와 연계되는 연간 24만 여건의 0701 사기범죄 발생 건수 중 07019 기타 사기행위와 연계되는 사기행위가 23만 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이할만한 하다. 물론 기타 사기행위의 다수는 형법상 사기죄로 나타났다.

07022 위조제품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표법 위반의 경우 2016년 기준 4,400여건 발생하였으나, 과다포섭의 문제로 연계불가 처리되었다. 시산 결과 0702 위조행위가 2016년 기준 연간 1만 7천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위조제품 범죄가 통계상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상표법 죄명코드 세분화를 통한 ICCS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07032 횡령에는 업무상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특경가법 횡령, 배임이 모두 포함되었다. 2016년 발생건수는 2만 6천여건이었으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는 횡령이 5만 2천 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횡령의 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ICCS 07032 횡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ICCS상 절도 대분류 아래로 연계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이 그 이유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07031 뇌물증수뢰를 합한 건수가 1400여건인데 반해 대검 범죄분석상 수뢰와 증뢰를 합한 건수는 1천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는 07031 뇌물증수뢰에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경가법(증재 등)이 포함된 것이 이유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뢰와 증뢰는 국제비교시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07039 부패행위에 특경가법(수재등, 알선수재),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발생건수가 1천여건으로 적지 않은 수이나, 우리의 범죄분류상 위 법률 위반의 경우 단순히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어 ICCS 비교상 통계적으로 부패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우려도 있다.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행위는 연간 5천여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의 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행위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와 주된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행위에 대해 07011 금융사

기로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표 68> ICCS 대분류 07의 시산 결과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중분류	2014 소분류	세분류	중분류	2015 소분류	세분류	중분류	2016 소분류	세분류			
0701	사기	07011 금융사기	24,855	15,715	9	25,589	15,767	1	24,994	7,781	3			
					532			4,524			2,719			
		07019 기타 사기 행위		23,150		28,822		28,153						
0702	위조 행위	07021 결제 수단의 위조	19,548	2,215	1,800	19,343	1,887	1,555	17,411	2,030	1,758			
					415			332			272			
		07022 위조 제품 범죄												
		07023 문서 위조 행위					13,532			13,401		11,942		
		07029 위조와 관련된 기타 행위					3,801			4,055		3,439		
0703	부패	07031 뇌물 중수뢰	31,998	1,292	494	33,637	1,587	684	30,661	1,411	557			
					738			903			854			
		07032 횡령					28,143			29,062		26,460		
		07033 직권 남용					1,593			1,747		1,780		
		07034 영향력 거래					12			20		17		
		07035 불법적인 부의 축적												
		07039 기타 부패 행위					968			1,221		993		
0704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행위	07041 돈세탁	3,872	204	4,560	297		2,326	240					
		07042 불법 문화재 매매												
		07049 범죄 수익금과 관련된 기타 행위										3,668		4,263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8,861		6,995		4,876							

ICCS와 우리나라의 죄명코드 연계 및 시산이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 상 범죄 행위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범죄분류에서 장물죄는 재산범죄에 포함되어 있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장물죄와 별도로 특별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ICCS가 장물죄를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기타행위의 중분류로 구분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사기 등의 재산범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ICCS의 부정수표단속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로 보는 것과는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표 69> ICCS 대분류 08의 시산 결과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발생건수		
				2014	2015	2016
0801	공공 행동규범 위반 행위	08011	폭력적 공공 무질서 범죄	0	1	1
		08012	사회·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4,491	5,710	7,314
		08019	기타 공공규범 위반 행위	411	520	531
0802	공공 성규범 위반 행위	08021	성매매	8,105	7,891	15,733
		08022	의설물	11,619	12,225	8,768
		08029	기타 공공 성규범 위반 행위	1,857	2,118	2,477
0803	표현의 자유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 위반 행위			
		08032	사회적 신념 및 규범 표현 관련 행위	30,161	35,579	34,669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국고세입 또는 규제 위반	08041	국세 납부 위반 행위	4,224	3,789	3,463
		08042	상업이나 금융 규제 위반 행위	11,110	12,220	9,554
		08043	도박 규제 위반 행위	8,697	8,831	13,882
		08044	상품 밀수	723	674	727
		08045	시장 조작 또는 내부 거래	286	356	214
		08049	기타 공공 행정 및 규제 위반	226	161	138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밀입국	1,710
0806	사법제도 침해 행위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1	재판 방해	21,064	21,461	21,633
		08062	사법 명령 위반	58	49	48
		08063	범죄 도의			
		08064	범죄 음모			
		08069	기타 사법체계 위반 행위	1	8	4
0807	민주선거 관련 행위	08071	과도한 유세 행위	0	2	12
		08079	기타 민주선거 관련 행위	2,323	376	1,721
0808	노동법 위반 행위	08081	집합 노동법 위반 행위	4,519	4,329	5,802
		08082	개별 노동법 위반 행위	46,094	44,701	47,449
0809	기타 공공 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08090	기타 공공 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2	6	3

한편, ICCS 대분류 07, 08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특별법 규정에 대다수 단일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계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ICCS ‘08032 사회적 신념 및 규범 표현 관련 행위’는 우리법률상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있다.

만약, 정보통신망법의 여러 가지 위반 유형 중 명예훼손에 대해 세분화된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유형 중 명예훼손에 대한 발생 건수를 확인할 수 없어 연간 1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연계된 08032에 대한 통계 왜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다포섭의 문제로 연계가 어려운 특별법에 대한 죄명코드 세분화가 추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표 70> ICCS 대분류 08 연계 중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세분화 예시

ICCS 08	한국죄명코드	법률명
08032	2235050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08032	2235050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08032	2235050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제4장 결론 및 제언

I. ICCS 대분류 01의 분석결과와 제언

국제범죄분류(ICCS)는 국가 간의 범죄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UNODC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범죄분류 체계이다. 국가 간 논의를 통하여 2015년에 합의된 범죄분류 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관련된 기관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통계청을 중심으로 ICCS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ICCS 번역 연구,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를 거쳐 ICCS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시산을 해보는 연구이다. 이전 연구에서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영역과 우리나라 죄명코드 간의 연계작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ICCS 01의 하위 영역에 몇 건의 범죄가 집계되는지 조사하였다.

ICCS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ICCS코드와 우리나라 죄명코드의 연계작업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기본법인 형법을 기본으로 각 죄에 대하여 죄명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통계를 집계해 오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범죄가 있거나, 새로운 범죄양상이 출현할 때 마다 추가된 각종 특별법들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들에 대한 죄명코드 부여방식이 주로 특별법 전체에 하나의 죄명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특별법 죄명코드 안에 여러 가지 상이한 범죄가 포함되는 경우 ICCS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특별법에서 세분화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하여 별도의 통계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다른 범죄영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통계를 집계할 때 사용하고 있는 죄명코드를 바탕으로 ICCS 형태의 범죄통계를 시산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님을 감안하고 통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오류를 줄여서 ICCS 대분류 01 영역에 대한 시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이전 연구에서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ICCS 하위 영역과 연계한 연계표를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검찰청의 실무자와 논의하여 변경된 죄명코드를 반영하여 최신 죄명코드로 분류가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연구당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체에 하나의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알 길이 없어 이를 연계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개정된 죄명코드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죄명코드에 균형법에 대한 코드도 포함되어 있어 이전 연구에서 연계하였으

나, 실제 시산할 때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도 균형법범의 경우 제외하였다. 그리고 실제 시산을 할 때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엑셀을 이용한 시산과 SPSS를 이용한 시산을 별도로 수행하여 각 시산된 결과를 비교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시산을 할 때 거쳤던 과정을 KICS 화면 캡처를 보여 주는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보안 사항이어서 제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공개 어려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에 대한 시산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대분류 ICCS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의 연도별 시산결과는 2014년 2354건, 2015년 2370건, 2016년 2958건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3년 평균은 2560건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위항목인 중분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중분류 「0101-고의에 의한 살인」은 2014년 450건, 2015년 451건, 2016년 433건으로 시산되었다. 3년 치의 고의에 의한 살인은 평균 445건이었다.
- 중분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는 3년 평균 517건을 보였으며, 2015년은 537건으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 중분류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은 하위분류로 소분류 「01031-살인고의 및 중한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을 포함한다. 세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는 특별법에 세분화된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합산한 결과는 2016년 통계치만 보기로 한다. 2016년 중분류 「0103-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의 발생건수는 1,917건이었다.
- 중분류 「0104-자살 방조 또는 교사」는 2014년 19건, 2015년 27건, 2016년 42건이었고, 3년 평균은 29건이었다.
- 중분류 「0106-불법 낙태」는 2014년 31건, 2015년 38건, 그리고 2016년 36건으로 시산되었고, 이들의 3년 평균은 35건이었다.
- 마지막으로 중분류 「0109-기타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는 2014년 25건, 2015년 24건, 그리고 2016년 22건이 기록되었고, 3년의 평균은 24건이었다.

우리나라 「범죄분석」과 ICCS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범죄분석」의 살인(기수)와 ICCS의 「0101-고의에 의한 살인」영역을 비교해 보면, ICCS 형태의 통계보고가 「범죄분석」보다 20% 정도 높게 보고가 되고, 살인 미수의 경

우 예비, 음모, 방조가 제외된 ICCS의 「0102-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가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으로 「범죄분석」의 살인 소계는 948건 이었고, ICCS 대분류 01의 총계는 2,958건 이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ICCS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가 「범죄분석」의 살인(기수) 보다 3.12배 높은 것이 된다.

분류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가지 통계가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계표에서 제시한 수치를 그냥 받아들임으로 핵심 통계 수치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결과 살인의 기수 영역을 서로 비교하면 「범죄분석」의 살인(기수)가 ICCS의 살인기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살인 항목에 대한 소계(총계)를 비교하면 ICCS가 「범죄분석」보다 많게 나타난다. 향후 ICCS로 시산된 범죄통계를 출판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산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고, 또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향후 ICCS의 다른 대분류 영역을 시산할 때는 01 영역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특별법의 죄명코드가 세분화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다. 향후 범죄통계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 죄명코드 세분화는 ICCS 연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통계를 생산하는데 있어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II. ICCS 대분류 07, 08의 연계결과와 제언

현행 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공무원범죄로 분류하고 사기, 횡령, 배임을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나, ICCS는 수뢰, 증뢰, 횡령(배임 포함), 직권남용(직무유기 포함), 영향력거래를 부패범죄(중분류, 부패범죄는 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행위라는 대분류에 포함)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기, 횡령, 배임을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증뢰도 공무원범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ICCS가 부패의 관점으로 행위를 구분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국가 간 범죄분류체계가 달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범죄행위와 특성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국가범죄통계의 분류체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법률상 죄명 및 위반법률 중심의 분류체계이다. 검찰은 대분류에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구분하고 있으며, 중분류 형법범은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범죄통계에서는 대분류 자체를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각기 다른 분류체계뿐 아니라 분류항목(강력범죄, 재산범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한국범죄분류체계를 정비할 때에는 ICCS 체계와 연계 외에도, 한국범죄분류체계로 구성된 행위들에 대한 정의, 즉 범죄행위에 분류항목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청·대검찰청 분류 항목수 비교

해당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경찰청	15	39	463	-
대검찰청	2	형법	8	98 (2016년 신설)
		특별법	114	

경찰청·대검찰청 분류체계 비교

범죄통계 분류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분류 (대검찰청)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① 강력범죄		(1) 재산범죄	1. 형법법
② 절도범죄		(2) 강력범죄(흉악)	
③ 폭력범죄		(3) 강력범죄(폭력)	
④ 지능범죄		(4) 위조범죄	
⑤ 풍속범죄		(5) 공무원범죄	
⑥ 특별경제범죄		(6) 풍속범죄	
⑦ 마약범죄		(7) 과실범죄	
⑧ 부건범죄		(8) 기타형법범죄	2. 특별법법
⑨ 환경범죄		(9)	
⑩ 교통범죄		⋮	
⑪ 노동범죄		⋮	
⑫ 안보범죄		⋮	
⑬ 선거범죄		⋮	
⑭ 영역범죄		⋮	
⑮ 기타범죄		⋮	
		⋮	
		⋮	
		⋮	
		(122)	

<그림 5>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범죄분류

한편, ICCS 표준 매뉴얼의 부록 1에 따르면, ICCS는 국가 간의 범죄율 비교에 중요한 범죄의 정의문제, 압수범죄 문제, 그리고 범죄로 기록(recording)하고 죄수(counting of crime)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ICCS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가 지금까지 발달시켜온 범죄통계 집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고하는 국가가 알아서 제반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소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ICCS 체계와 한국죄명코드를 연계하는 기본적인 연계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원칙, 죄명에 대해서는 미수와 기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등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였고, 특히 결과적가중범과 결함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계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교사와 방조는 공범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건(offence)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범죄이지만, 범죄자(offender)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사건에 교사나 방조범이 있을 경우 범죄는 2건 이상이 된다. 따라서 죄수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사는 형량에 있어서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만큼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방조의 경우도 미수와 마찬가지로 ICCS의 행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위한 세분화 변수에 별도의 설명 태그로서 ‘범죄 실행 협박’, ‘범죄의 방조,’ ‘범죄의 공범’, ‘범죄의 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교사죄와 방조죄에 관한 죄명코드는 정범이 연계되는 ICCS의 분류단위에 연계한다. 즉, 01041 자살방조, 01042 기타 자살방조 또는 교사 행위는 소분류와 연계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 모든 교사와 방조의 경우 정범에 연계한다.

- 위 원칙에 따라 0109 연계표를 작성시 교사와 방조를 모두 제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교사와 방조를 포함한 것과 불포함 한 것을 비교하여 시산한 결과, 해마다 10건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0109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교사와 방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계원칙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연계원칙을 점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산 및 연계를 재검토 한 결과, 교사와 방조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계원칙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 위반 행위 하나에 부여된 죄명코드를 세분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연계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ICCS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시 과다포섭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대분류 차원에서도 연계 불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ICCS의 규정 취지에 따라 명백히 과다포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의 경우에는 ICCS와 연계하지 않았다. ICCS와 연계할 때, 한국 법률에 맞게 일부를 과다포섭 혹은 과소포섭을 할 경우 오히려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특별법들의 과다포섭 또는 과소포섭의 문제는 다른 대분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ICCS 01에서 소분류 010321(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는 대검찰청에서 2016년도에 죄명코드 분류 작업을 하면서 이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체에 하나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던 것을 코드 세분화를 실시하면서 201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다. 즉,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사에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어 시산에 잡힌 것이다. 특별법에 대한 코드세분화 여부에 따라서 범죄발생 통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시산을 통해서 나타났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단일 코드를 세분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2017년의 연계원칙에 이어, 특별법 위반에 대해 죄명코드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 특별법의 주요 입법취지가 ICCS 분류에서 정하는 행위유형에 대한 금지 및 제재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의 대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ICCS 체계와 동일한 경우
- 실무상 특별법위반 중 ICCS 범죄분류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만 주로 처벌되고 있어 연계하더라도 통계상의 차이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발생건수가 연간 1천 건 이상 집계되는 특별법 위반행위가 ICCS와 연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통계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다만, 연간 1천 건 이상이 발생하는 특별법 중 건설, 건축 관련 각종 법규위반, 도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 상표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민등록법 등은 ICCS 07, 08에서는 과다포섭의 문제로 연계가 불가하였다. 이 죄명코드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처벌하는 법규로 볼 여지가 있어 국간 비교 목적에 따라서는 연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ICCS 체계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우선적인 연계원칙은 마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장 큰 연계쟁점인 특별법의 죄명코드 세분화와 같은 문제 외에도,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국의 죄명, 예를 들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범죄 행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세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산을 통해 연계표를 재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연계 원칙과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만 여개의 한국죄명코드의 연계가 완료되더라도, 대분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거나 누락된 죄명코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도 최종적으로 보완·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강소영 외. (2017).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 나영민. (2011).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1년과 범죄통계의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다혜·임석순·지유미. (201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대현·이용혁·장현석. (2016).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II. 국외문헌

- Bisogno, E., Dawson-Faber, J., & Jandle, M. (2015).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A new instrument to improve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5), 535-550.
- UNODC (2018).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mplementation manual.

III. 기타

-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statistics/Activities/Session_2_ICCS_-_Global_Update_and_Implementation_Manual.pdf
-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Crime-statistics/ICCS_Implementation_National_Roadmap.pdf
- <https://connections.unite.un.org/communities/login>
- <https://ucr.fbi.gov/nibrs/summary-reporting-system-srs-user-manual>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